



현안분석 2011-04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정미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1-04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SBA)’

연구자 : 한정미(부연구위원)

Han, Joung-Mi

2011. 7.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EU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 검토의 필요성
 -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EU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함
 - EU 중소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의 주요내용과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정 필요성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기준으로 2011년 7월 현재 17개에 달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법제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신규제도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 중소기업 법제는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가장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선진국의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EU SBA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개정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SBA의 발표 및 경과

- 2008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SBA를 발표하였다. SBA는 EU 회원국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의 정책 프레임워크 되었음
-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음
-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됨

SBA 이행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의 제시

-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
-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 금융 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

- 주요 내용
 - 기업가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파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의 기회제공
 - 녹색시장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기회로의 전환
- 회원국에 대하여 SBA의 미시행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III. 기대효과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선자료로 활용
- EU SBA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규 제도도입 검토
- 신용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행정부담의 경감, 창업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시스템 적용,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 시행 등

▶ 주제어 : EU 중소기업법(SBA), SBA Review, SBA 원칙, 중소기업 현장,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EU compromises of about 23,000,000 small businesses (99% of the whole enterprise) and 90,000,000 employees (67% of the private sector employment), which has been estimated to be large enough to support the overall European economy.
- In order for economic growth and the creation of new jobs, the EU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sulting in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uch companies. This situation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 Currently, South Korea's SME-related laws are based on the rules of the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of July 2011, there are about 17 different laws, however, because many small businesses are prone to change, we encourage continuous revisions and future debates regarding such legal standards.
- Therefore,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ssess whether Korea has been abiding by such laws. Our purpose is to improve and create future

SME-related legislation that may advance our country'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I.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 On June 25th, 2008, the EU Commission announced the SBA.
 - The SBA helps the members of EU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as its policy frame work.
 - Furthermore, on March 10th, 2009, the EU Parliament passed the SBA resolution as they put more weight to implementing the SBA.
 - It was further revised two years later on January 28th, 2010.
- On February 23rd, 2011, the EU Commission checked and assessed the status of the implemented SBA, announcing a 'SBA Review', which provid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of SBA.
- Based on the SBA, the members of the EU works to promote such EU small businesses to be top-notch by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opening financial access, and improving market admittance conditions.

III.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ntrepreneurship will be rewarded
- Permitting financial support for SMEs

-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SMEs to recover when faced in bankruptcy
- Providing the transition to green market opportunities

IV. Legal Improvements

- The adopt Credit Ombudsman
- Simplify procedures for small business bankruptcy recovery
- Reduce administration burdens, and simplify procedures for establishing new businesses
- Apply a simplified accounting system for small-scale SMEs
- Further implement the regulatory assessment system of small businesses

➤ Key Words :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SBA), SBA Review, SBA Principle, European Charter for Small Busines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Evaluating the Impact of Future Legislative Initiatives on SMEs(SMEs Tes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 2 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17
제 1 절 서 설	17
제 2 절 EU의 규범체계	18
I. EU의 입법원칙	18
II. 규범체계	20
제 3 절 SBA의 의의와 적용	23
I. “COMMUNICATION”의 의미와 기능	23
II. SBA의 의미	24
제 3 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29
제 1 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29
I. 제안배경	29
II. SBA 10대 원칙과 이행사항	30
제 2 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41
I. 결의안의 배경	41

II. 주요내용	42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53
제 1 절 SBA에 대한 평가	53
I . ‘SBA Review’ 추진배경	53
II. SBA 시행경과와 평가	53
III. SBA 원칙별 실천사례	54
제 2 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59
I .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추가조치 개요	59
II. 추가조치사항별 중점방향	60
제 5 장 결 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67
제 1 절 서 설	67
제 2 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68
I .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68
II. 자원효율화 및 녹색시장에 대한 지원	70
III.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71
IV. 행정부담의 경감	74
V.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77
참 고 문 헌	79
참 고 자 료	
□ 유럽 중소기업 협약	85
□ 유럽 ‘중소기업법(SBA)’	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EU의 중소기업 정책은 1983년 EC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럽중소기업과 수공업을 위한 해’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추진 배경은 유럽 각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 이었다. EU 중소기업 정책의 이념은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think small first)’로, 이 이념은 유럽 각국의 중소기업정책과 법제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2000년 리스본에서 열린 EU 이사회는 “2010년까지 EU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로 명명된 이 정책은 경쟁력과 고용,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3개의 “황금축(golden triangle)”을 달성함으로써 유럽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보다 현대화된 유럽형 사회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 중소기업헌장(European Charter for Small Business)’은 리스본 아젠다의 목표 달성을 필수적인 이노베이션, 고용창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지침을 주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원칙(Principles) 부문에서 제시한데 이어 실행지침(Lines of action)으로서 “① 창업교육

및 훈련, ② 쉽고 빠른 창업, ③ 창업지향적으로 규제 완화, ④ 기술 훈련 및 평생교육 지원, 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선, ⑥ 통신, 유트리티,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시장 창출, ⑦ 조세, 금융 시스템 개선, ⑧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⑨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EU출범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里斯본 아젠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법적, 재정적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2008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SBA는 EU 회원국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되었으며,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완화, 금융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으며,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되었고,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EU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기준으로 2011년 7월 현재 17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도입여부를 고려 중인 제도도 있다. 현재도 「중소기업기본법」은 2011년 3월 현재 정부안을 포

함한 4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 중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용범위 확대,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집중화를 위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적인 개정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비교적 잦은 제·개정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응에 치우친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중소기업 법제 분야는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그 효율성이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BA의 주요내용과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개정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과 EU 의회의 SBA결의안, SBA Review 보고서를 중심으로 EU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SBA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SBA에 따른 회원국의 구체적인 입법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회원국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이후의 연구로 수행하도록 한다. SBA의 시사점을 반영하기 위한 현행법제의 검토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타 법령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을 정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¹⁾을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학계 전문가의 개별자문 및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였다.

1) 이 연구를 위하여 심재한(영남대학교 교수), 임 현(단국대학교 교수), 박정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 이형철(중소기업청 사무관),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및 토론(2011. 6. 22)이 있었다.

제 2 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제 1 절 서 설

EU는 2011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의회,²⁾ 이사회,³⁾ 집행위원회⁴⁾를 기관으로 두고 있다.⁵⁾ 유럽의 각 국가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EU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표한 이후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EU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EU는 회원국에 효력을 미치는 각종 규범을 제정할 수 있고, 각 규범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체계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라 EU의 입법시스템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SBA가 EU 규범체계의 어떤 부분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는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설립을 가능케 하고 유럽연합의 기본조직 및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조약 등의 제1차 규범(primary sources, Primäres Gemeinschaftsrecht)과 이를

2) 유럽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유럽의회는 EU의 공동 입법기관의 하나이며,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이사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임명에 참여하고, EU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3) 리스본조약에 의해 개정된 EU조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의 결의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U 기관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기준을 확립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새로운 유럽법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 및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EU주요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상세는 박덕영 외, 「EU법 강의」, 박영사, 2010. 9. 15, 31쪽 이하 참조.

구체화하는 제2차 규범(secondary sources, Sekundäres Gemeinschaftsrecht)으로 나누어진다.⁶⁾ 유럽연합의 제1차 규범으로는 유럽연합을 창설하고 존속시키는 조약이며, 제2차 규범으로는 이러한 조약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입법한 법령들을 의미한다.⁷⁾ 제2차 규범으로서 입법의 형태는 규칙(Regulation, Verordnung), 지침(Directive, Richtlinie), 결정(Decision, Entscheidung), 권고(Recommendation, Empfehlung) 및 의견(Opinion, Stellungnahme)의 다섯 가지가 있다.⁸⁾

이와 같이 구분되는 유럽연합의 규범체계에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률(Act, Gesetz)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주된 법원(法源)인지 여부에 따라 SBA의 기능적 의미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U의 규범체계를 개관하고, SBA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한다.

제 2 절 EU의 규범체계

I . EU의 입법원칙

유럽연합조약을 기초한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제2차 규범에 대해 법률이라는 용어 대신 규칙 내지 지침이라는 용어선택을 통하여 유럽연합과 회원국가간의 법령에 차별성을 두고 또한 회원국의 입법기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⁹⁾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개

6)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지만 불문법도 유럽연합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유럽연합의 불문법원으로서는 유럽연합법원의 판례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적용할 유럽연합법이 없거나 유럽재판소 등에서 유럽연합법을 해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 제1차 규범과 제2차 규범의 관계는 제1차 규범은 제2차 규범의 근거가 되며, 제2차 규범의 유효성 판단기준이 된다.

8) 심재한, “EU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사례”, 「EU중소기업법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6. 22, 10쪽.

9) 박노형, “EC입법-EC규칙의 법적 분석”, 법학논집 제2집, 고려대학교, 1993, 211쪽.

별 주권국가와 달리 영역내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포괄적인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¹⁰⁾

유럽연합은 조약에 의하여 공동체의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상부의 조직단위는 하부 조직단위가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만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조직에 관한 일반원리로서 소규모 조직이나 국가 및 국제사회 의 대규모 조직에 이르기까지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의 보충적이고 부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리를 존중하여 일정한 과제의 범위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회원국 보다는 유럽연합이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유럽연합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또는 principle of complementarity)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여 EC 제3b조¹¹⁾에 삽입되어 유럽연합법 질서에 승인되었다.¹²⁾ 이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유럽연합차원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³⁾

10) 이하 EU 입법원칙의 내용은 심재한, 앞의 자료집, 11-12쪽을 발췌하여 전재함

11) “공동체는 본 조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과 조약에서 위임하고 있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전속적인 관할 사항이 아닌 영역의 경우, 공동체는 조치안의 규모나 효과를 감안할 때 회원국들이 조치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공동체가 담당할 경우에 이를 보다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동체가 취하는 조치는 본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12) 김대순, “마스트리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 법학회논총, 제39권 제2호, 1994, 69쪽.

13) 신용대,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관련법규의 내용과 시사점”, 법제연구, 제6호, 1994. 6, 120쪽.

II. 규범체계

리스본조약 이전, 즉 니스조약 체제하에서 법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EC) 제249조이다. 이에 따르면 제2차 규범이 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의견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리스본조약 하에서도 이 다섯 가지 유형과 명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¹⁴⁾

1. 규칙

규칙(Regulation, Verordnung)은 EU의 2차 규범체계 중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TFEU 제288조의 “규칙은 일반적 적용성이 있다. 규칙은 완전한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¹⁵⁾

EU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general application)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규칙은 그 전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조항이 효력이 있으며, 개인이나 회원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관들에 대하여 적용된다.¹⁶⁾ 적용범위의 측면에서도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¹⁷⁾ 회원국이 국내법으로의 비준 등 별

14) 심재한, 앞의 자료집, 14쪽.

15) “A regulation shall have general application. It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16) 회원국은 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효력발생의 유보를 둔다든가 규칙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국가에 유리한 내용만이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등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칙의 성격은 지침의 이행조치를 비교적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지침과 구별되고 있다. 심재한, 앞의 자료집, 15쪽.

17) 유럽연합에서 채택하는 규칙은 유럽연합 조약에 근거를 두게 되므로, 규칙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조약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및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4. 12.

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직접효력을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⁸⁾

2. 지 침

지침(Directive, Richtlinie)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추구하여야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국에서는 해당 국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수단에 적합하게 그 정책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입법을 통하여 그 수단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 지침의 실행의 형태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국의 의회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⁹⁾ 지침도 EU의 법규법이지만, 규칙과 달리 “전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에 의하여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TFEU 제288조에서는 “지침은 달성해야 할 결과에 대하여 시달대상인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형태와 방식은 해당 회원국의 국내당국이 선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하지 않으면 의무이행 소송²⁰⁾의 대상이 된다.²¹⁾

18)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헌법과 충돌의 여지가 많은 법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채형복,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헌법 연구, 제16권 제3호, 918쪽.

19) 심재한, 앞의 자료집, 16쪽.

20) TFEU 제258조(구 TEC 제226조)와 TFEU 제259조(구 TEC 제227조)는 유럽위원회 와 회원국들 각각에게 어느 회원국의 의무위반을 법원에 제소하도록 허용한다. 의무의 불이행(failure to fulfil)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공동체법에 위반된 행위의 결과이다.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성실한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적용법규를 제정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한다. 또한 회원국이 공동체법을 위반한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도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법에 위반하는 회원국 규정의 유지는 비록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확인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외의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광윤, “유럽연합의 소송”, 2007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2. 16-17쪽.

21) 심재한, 위의 자료집, 16쪽.

3. 결 정

결정(Decision, Entscheidung)이란 특정 회원국이나 어느 개인, 단체 등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²²⁾ 이러한 결정의 모든 내용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수법자들에게 완전한 구속력²³⁾이 있다. 결정의 모든 조항이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규칙과 동일하고, 지침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⁴⁾ 규칙과 결정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바 규칙은 일반적인 조치로서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반면 결정은 발하여진 대상에 한정하여 개별적 행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²⁵⁾

4. 권고, 의견

권고(Recommendation, Empfehlung) 및 의견(Opinion, Stellungnahme)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것²⁶⁾으로 이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의 행동을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²⁷⁾ 권고와 의견은 기능적으로 뚜렷한 차이 없이 쓰여지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개인과 기업·단체를 대상에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침과 다르며, 유럽연합의 법규와 회원국의 국내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평가되

22) 이의 근거는 TFEU 제288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달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 결정은 오직 그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A decision which specifies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shall be binding only on them)”고 규정하고 있다.

23) TFEU 제288조(구 TEC 제249조) “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24) 심재한, 앞의 자료집, 17쪽.

25) 채형복,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현법연구, 제16권 제3호, 918쪽, 심재한, 위의 자료집, 17쪽, 재인용.

26) TFEU 제288조(구 TEC 제249조)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shall have no binding force.”

27) 심재한, 앞의 자료집, 17쪽.

고 있는 반면,²⁸⁾ 의견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EU차원의 ‘관점의 표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체기관이 발한다.²⁹⁾

제 3 절 SBA의 의의와 적용

I . “COMMUNICATION”의 의미와 기능

EU 집행위원회는 SBA를 발표할 당시에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의회, 유럽 경제 사회 집행 위원회와 지역 집행 위원회에 보내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제안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임을 밝히고 있다.³⁰⁾ 즉, SBA는 “Small Business ACT”라는 명칭을 달고 있으나, 사실 그 실제 의미는 EU의 “COMMUNICATION (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불과한 것이다.³¹⁾ EU에서 입법행위가 있을 경우 ‘EU 공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³²⁾에 발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BA는 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법이 위에서 설명한 EU의 규범체계에 속하거나 입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을 나타낸다.

제안서는 집행위원회가 연합 차원의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법률안이 입법되기 이전 다른 유럽연합 기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 또는 권고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서 자체가

28) 심재한, 앞의 자료집, 18쪽.

29)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4년 12월호.

3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08DC0394:en:NOT>

31) “COMMUNICATION”的 번역에 대하여 일관된 정리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는 EU 규범상의 ‘권고’, ‘의견’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 <http://eur-lex.europa.eu/JOIndex.do>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회원국들에게 그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장려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나타낸 일종의 행동지침으로서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안서 관련 EU의 입법절차를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대하여 각료회의(Council)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의 입법절차를 예정하고 있다.³³⁾ 집행위원회는 제안서를 발행한 후 규칙이나 지침 등을 통해 입법을 제안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제안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집행을 규칙이나 지침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다.

제안서 발행의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잡한 연합기관들의 운영절차에 따른 유럽시민들의 유리(遊離)를 해소하는데 있다. 즉, EU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SBA에서 10가지 원칙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지시문 안이 제안되었다. 만약 이들이 앞서 언급한 입법절차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입법)이 된다면 SBA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II. SBA의 의미

1. 연성법으로의 해석

SBA는 제안서에서 유럽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인지하기 위한 EU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리고 EU와 회원국들

33) 집행위원회가 입법초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하면, 각료회의는 유럽의회측에 그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달하는데, 집행위원회나 각료회의가 의회의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의회와의 협의절차 자체가 생략되면 그 법안은 무효이다. 이처럼 의회의 입법행위 강화는 민주성 결여(democracy deficit)를 해소하려는데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는 크게 협의절차, 공조절차, 공동결정절차 그리고 동의절차가 있다. 입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ul Craig & Grainne De Burca, EU Law (3rd ed., 2003), pp. 139-149;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72-77쪽 참조.

의 포괄적인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해 “Act(법)”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⁴⁾ 또한, 집행위원회가 SBA를 마련한 이후 결의된 유럽연합 의회의 결의안에서도 SBA가 법적인 구속장치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혔다.³⁵⁾

그러나 중소기업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을 제안하는 SBA를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단순한 권고안이나 정책보고서로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준에 EU에서 발표되었던 제안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 의회는 이 SBA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게 EU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의 입법지침으로써 SBA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³⁶⁾

따라서 SBA는 단순한 제안서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EU의 정책의지와 그 이행의 요구강도로 보아 어려운 것이라 판단되며, 결국 SBA는 국제법상 연성법(軟性法, soft-law)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⁷⁾

국제법상 연성법이란 일반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의도된 국제법 입법을 말한다. 즉, 연성법은 국제법의 형식적 법원이라는 기준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간 설정 및 적용된 행위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에 열거된 형식 외

3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ink Small First”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5.6.2008 COM(2008) 394 final, p. 4.

3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2008/2237(INI)), p. 2.

36)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clusions on the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3094th COMPETITIVENESS(Internal Market, Industry, Research and Space) Council Meeting Brussels (May 30, 2011), p. 2, para 1 & p. 3, para. 5. available at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intm/122326.pdf.

37)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Communication을 연성법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Linda Senden, *Soft Law in European Community Law* (2004), pp. 24 & 119-120 참조.

에 발생한 행위규칙(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및 최종의정서 등)으로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것이 이에 해당된다.³⁸⁾³⁹⁾

2. 연성법의 기능과 적용

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하는데 있어 회원국 간 합의를 보기 어려운 경우, 경성법(硬性法, hard-law)의 대안으로서 연성법을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⁴⁰⁾ 즉,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회원국 정부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규정이나 지시문 형태의 법원으로 성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이에 대한 잠정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⁴¹⁾

제안서를 통해서 법원성을 갖기 이전 법외적이고 임시적인 형태에서 법 이전의 규범으로서 그 안정성이 시험된 후, 그 실행 가능한 부분(회원국 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성을 부여하려는 것

38) UN총회의 결의가 가장 대표적인 연성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만장일치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는 그 자체로는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 단계” 또는 “관습법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 신념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 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국제법에서는 전통적인 국제법과는 달리 연성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1997, 111쪽.

39) Murphy는 연성법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1) 국가 간의 일반적인 협력의무만을 규정하는 조약규정이나 특정문제에 대해 미래의 합의에 도달할 것만을 요구하는 조약규정, 2) 조약이 아닌 선언(declaration)이나 특정한 희망을 규정한 국가들 간의 정치적 합의, 3) 권고적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결의, 4)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단체의 행동규칙 등이라 한다. Sean D. Murph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006, p. 96.

40) *Ibid.*, p. 24.

41) Henrik Frykman & Ulrika Morth, *Soft law and Three Notions of Democracy: The Case of the EU*, in *Soft law in governance and regulation: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155 (Ulrika Morth ed., 2004), pp. 162-163. 연성법의 형태로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것은 Communication외에 guideline이나 notice가 있으며, 경쟁법과 관련하여 “comfort letter”에 의지하기도 한다. Josephine Steiner & Lorna Woods, *Text Book on EC Law* (8th ed., 2003), p. 56.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서는 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들에게 입법안에 대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 회원국 시민들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유럽연합 운영의 복잡성으로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는 현 시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성법으로서 제안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없다고 하여 법적 효과(legal effect)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연성법으로서 제안서에 대한 구속성 여부의 기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행동규범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제안서가 유효한 법규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원국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 좋은 참작 자료가 될 것이다. 유럽사법법원(ECJ) 또한 회원국 국내법원이 공동체 조약과 관련된 자국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권고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권고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³⁾

3. 소 결

유럽 중소기업법은 개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정책적인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법(ACT)’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

42)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26쪽.

43) Case C-322/88, Salvatore Grimaldi v. Fonds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1989] ECR 4407.

제 2 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중소기업법을 제정하였다고 유럽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SBA는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제안서’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회원국에게 법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EU의 회원국들이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입법안 제출 시, SBA는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되었을 것이며, 향후에도 회원국 내의 중소기업 관련법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4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5.6.2008 COM(2008) 394 final, p. 4.

제 3 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제 1 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I . 제안배경

SBA의 제정은 유럽연합 내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경쟁업체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고,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생존 기업들은 7년 내에 평균적으로 60%에 이르는 고용을 증대하는 반면 유럽 생존 기업들의 고용 성장은 10~20% 수준에 머문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금융(특히 벤처 자본), 연구, 혁신,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사업활동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21% 가량이 자금조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⁵⁾ 초소형 업체들의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더 높고, 대기업들과 비교해 유럽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혁신을 수행한 경우는 훨씬 더 드물다. 또한, 운영 기술과 과학 기술들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들과 각국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여전한 경직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위원회는 역내 중소기업들이 관료주의, 대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구축한다는 리스본 어젠다 아래 ‘성장 및 일자리 전략’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부터 SBA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SBA는 EU 역내 중소기업에 재정적 · 인적 지원을 지

45) 2007 Observatory of EU SMEs.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analysis/observatory_en.htm

원함으로써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유럽위원회는 유럽중소기업협의회와 유럽노동조합총연맹 등 중소기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한 SBA를 2008년 6월 25일 채택한 데 이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⁴⁶⁾

II. SBA 10대 원칙과 이행사항

SBA는 기업이 번성하고 기업가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10대 원칙을 토대로 유럽위원회와 EU 회원국에 총 86개 실천사항을 관계법령에 반영하도록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원칙의 이행을 통하여 회원국 전역에서 법적, 행정적 환경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다.⁴⁷⁾ SBA의 10대 원칙과 주요 이행사항(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대 원칙>

- I.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II.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 III. “작은 것 먼저 생각하라” 원칙에 따라 법규를 설계한다.
- IV.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 V.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공공 정책 도구들을 조정한다 : 공공 조달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가 원조 가능성들을 더 잘 활용한다.

46) 심재한, 앞의 논문, 11쪽.

4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4.

- VI.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거래에서 적기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과 사업환경을 발전시킨다.
- VII. 중소기업들이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 VIII. 중소기업들의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모든 형태의 혁신을 촉진한다.
- IX. 중소기업들이 환경적인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다.
- X.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한다.

1. 기업가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기업가 정신에 관한 ‘2007 FlashEurobarometer’⁴⁸⁾는 미국인의 61%가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데 비해 유럽인의 45%가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은 기업가정신이 보상받고, 청년과 여성 등도 기업가적인 관심과 재능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원칙의 이행을 위한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첫째, 유럽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학교교육과정이나 청년층에 대한 교육부터 적절한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세(특히, 증여세와 배당금에 대한 재산세 등)가 사업의 양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셋째, 사업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여성기업인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다섯째, 기업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주민을 지원하고 모니터하도록 하였다.

48)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urvey/eurobarometer_intro.htm

2. 재기의 기회제공

전체 폐업 가운데 15%의 원인이 파산이다. 매년 평균 70만개 가량의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연평균 2백 8십만 개의 일자리가 이와 관련 되어 있다.⁴⁹⁾ EU에서 실패의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는 재창업자의 사업 잠재력을 저평가하게 되어 유럽인의 47%가 과거 실패했던 업체에서 주문하기를 꺼린다. 또한, 새로 창업하는 일은 긴 파산 절차로 인해 복잡해지는데, 유럽 연합에서 파산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개월에서 9년까지 다양하다.⁵⁰⁾ 따라서 고의성이 없이 파산상황에 직면한 기업가에게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조속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의 이행을 위한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첫째, 기업가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둘째, 고의성이 없는 파산의 경우 사업정리절차를 1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창업자도 신규 창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였다.

3.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에 따른 법규 설계

EU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제약은 ‘행정적인 법규들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법규와 행정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대기업들이 법규 의무로 인해 피고용인 1인당 1유로를 소비하는 데 반해, 소규모 기업은 평균 10유로까지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⁵¹⁾ 또한, 유럽 중소기업의 36%가 지난 2년 동안

49) “Overcoming the stigma of business failure - for a second chance policy - Implementing the Lisbon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COM(2007) 584 final, 5.10.2007.

5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7.

51)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on “Models to Reduce the Disproportionate Regulatory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그들의 사업 활동을 저해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법안을 설계할 때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규들을 설계해야 하고 기존의 법률 환경을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집행 위원회는 2012년까지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이 원칙의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첫째,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만들 경우 적어도 8주 동안 중소기업 단체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고, 둘째, 유럽연합의 법률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임시조치들을 활용하게 하였다. 셋째, 2012년까지 행정적인 부담의 25%를 감소시키지 못한 회원국은 그 공약에 부합할 만한 목표를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넷째, 유럽연합의 행정적인 부담경감에 관한 입법안을 채택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가세의 한계치를 10만 유로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공공 행정기관들의 중소기업 요구 수용

EU 중소기업의 36%가 지난 2년간 불필요한 행정절차(red tape)로 인해 그들의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⁵²⁾

현대적이고 수용력 있는 공공 행정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성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정부와 원스톱 사무소들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burden on SMEs”, May 2007.

52) 서정대,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 EU위원회의 중소기업을 위한 결의”, 중소기업연구원, 2008. 10. 31, 10쪽.

서비스 지침의 지속적인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회원국들에게 단일한 창구설립을 요구하고 허가 체계의 수를 줄이고 간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 장애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EU와 회원국들은 전자정부와 원스톱 솔루션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한 간소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첫째,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둘째, 사업면허 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가속화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은 최대 1개월로 정하였다. 셋째, 행정기관에서 이미 입수한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다시 요청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을 불필요하게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법규나 절차의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단일창구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기업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완성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5.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공공정책의 조정

중소기업들은 EU GDP의 16%를 차지하는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장벽에 부딪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초소형 업체들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 기관들도 신생 혁신기업들보다는 이력이 있는 대기업들과 수주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5년 유럽 연합의 한계치를 넘는 공공 조달 가치의 42%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⁵³⁾ 그러나 앞으로도 수주 절차에서 공공 기관들과

53) http://ec.europa.eu/enterprise/entrepreneurship/docs/SME_public_procurement_Summary.pdf

계약하는 데에 따르는 요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EU의 공공 조달 기본 틀을 적용하는 방법에 공공기관들이 집중하게 하는 법령을 활용해야 한다.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첫째, EU 공공조달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포탈을 설치하고, 둘째, 계약기관들이 계약을 더 세분화하여, 계약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매자들 사이의 상호이해 여건을 조성하며, 넷째, 중소기업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원조 정책의 초점을 조성하도록 촉구하였다.

6. 금융접근의 용이성 확보 및 적기 대금지급 환경의 조성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 그룹을 통해 실질적인 액수가 10억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한 EU의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에게 행정적인 부담에 이어 두 번째 어려움으로 꼽힌다.

위험을 꺼리는 태도는 흔히 투자자와 은행들로 하여금 신생 업체나 초기 팽창 국면에 있는 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 많은 기업가들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금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잠재적 금융가들에게 그들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은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유럽의 대금 지불 지연 문화로 인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 받는 데에 평균적으로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0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채무불이행 4건 가운데 한 건은

대금 지불 자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매년 4십 5만개의 일자리 상실과 2백 5십억 유로의 상실로 나타났다.⁵⁴⁾⁵⁵⁾

따라서 유럽 연합과 회원국은 중소기업들이 금융, 특히 초기 투자자금, 소액 금융, 메자닌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의 상거래에서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환경과 사업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여섯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대해서는 첫째, 단일 시장에서 벤처 자본 펀드들이 국내 펀드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규와 세금 장벽들을 없애도록 하고, 둘째, 법인 이윤에 대한 조세를 통하여 투자를 조장하도록 보장할 것 등의 투자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7.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 따른 혜택증대

EU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공통된 법규에 따라 움직이는 5억이 넘는 고객들을 갖춘 하나의 폭넓은 공동 시장에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7개의 서로 다른 국가 법규들을 단일한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 법규들로 대체하는 것은 법규의 간소화가 중소기업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부족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서로 다른 회원국들에서 사업 기회와 활용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여러 법률 시스템들을 다루는 데에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그들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5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11.

55) 이와 관련하여 유럽투자은행그룹은 비 은행권 소액금융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유로의 초기 자본으로 새로운 “마이크로 펀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문이나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형태의 공공 지원이 큰 혜택이 될 것인데, 최근에 EU 집행위원회는 ‘Enterprise Europe Network’⁵⁶⁾을 출범시켜,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관련해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각종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된 표준의 인증 과정을 포함 한 표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시장의 혜택 증대를 위해 EU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재 산권(IPR)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는데, 예컨대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전매 관할권과 범 유럽 전매 관할권을 포함해서 유럽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특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EU에서는 구체적으로 단일시장 정책의 관리와 그에 관한 정보를 통해 표준의 개발에서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더 잘 대변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이 특허와 상표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과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이 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에 대하여 유럽표준기구들에 대하여 첫째, EU 표준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공조 아래 사업모델을 개발할 것, 둘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셋째, 유럽연합 표준에 관한 요약을 발표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였다.

회원국의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상호인정원칙의 적용을 보장할 것, 둘째, 단일시장의 권리행사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SOLVIT⁵⁷⁾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강화할 것, 셋째, 각국의 표준기구들이 유럽표준단체들과

56) <http://www.enterprise-europe-network.ec.europa.eu/>

57) http://ec.europa.eu/solvit/site/index_en.htm

함께 중소기업이 표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장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8. 기술개발과 혁신의 촉진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혁신들을 촉진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연구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 국가를 초월한 연구, 중소기업에 의한 클러스터의 구성과 능동적인 지적 재산 운영에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 제시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상담에 응한 회사의 60% 이상은 학교가 기업가들과 회사 직원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고, 이 결과는 읽기, 쓰기, 자연과학, 경영, 기술, ICT, 언어 기술들과 같은 필수적인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늘 제공하고 그들이 창의적이 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요구를 부각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제공할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평생 교육의 중요한 능력에 관한 유럽 참고 기본 틀⁵⁸⁾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⁵⁹⁾

기술 부족은 연구와 혁신의 이용되지 않은 잠재력과 연결된다. 2007년 유럽 연합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 가량이 신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신상품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연구공동체에 더 잘 통합하고 대학과 중소기업 사이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는 첫째, 혁신클러스터의 참여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려, 둘째, 혁신프로그램 및 지원금의 혜

58)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18.12.2006.

5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14.

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전자송장과 전자정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용 전자신분증의 개발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9. 환경문제의 전환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이 환경적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즉, 더 많은 정보, 전문 기술과 금융의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서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이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녹색시장(green market)’과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의 기회를 완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 에너지 공급의 부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은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도전이다.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업모델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에너지와 원료의 가격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와 기후 변화에 대한 사전정보에 취약하다.⁶⁰⁾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기회로 삼기 위해 환경관련 문제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들의 효율성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는 첫째,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원조에 관한 공동체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경제 효율적인 사업과 제품을 위한 인센티브들(예를 들어, 조세 인센티브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사업의 자금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급)을 제공하고 GBER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 원조에 간소화된 접근법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에게 환경 친화적 제품과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집 정책 프로그램에 할당된 2십 5억 유로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60)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29%만이 에너지나 원료 절감을 위한 수단들을 도입했고, 대기업이 19%인데 비해 유럽 연합중소 기업의 4%만이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도입했다.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16.*

10. 시장성장의 지원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기업 훈련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외부의 시장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유럽 중소기업의 8%만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대기업(28%)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판단하였고, 중소기업들이 세계화로 제공된 기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을 원칙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의 개선, 지적 재산권 시행, 공정한 경쟁의 보장에 더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특히 최근 유럽 연합의 확대는 구 회원국들과 신 회원국들 모두에서 온 회사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는 유럽연합 후보 국가들과 인접 국가들에서 시장 기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무역 장벽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그들의 제한된 자원과 위험을 흡수하는 낮은 능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에서 잠재적인 동반자들과 틈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사업에 대한 문화적인 장벽과 법규와 법률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 원칙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국에게는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지도를 장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제 2 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I. 결의안의 배경

2007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SBA는 유럽 내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집행위원회는 SBA가 정부 차원에서 유럽의회와 중소기업 공동체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들 모두의 완전한 정치적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⁶¹⁾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유럽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신속히 관련 법안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럽의회는 2009년 3월 10일 SBA 유럽의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⁶²⁾

유럽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배경으로 ① 유럽 내 2,300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10,000만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혁신의 주된 원천이며,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고용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 ② 글로벌화의 요구에 맞도록 중소기업을 발전 적응시킬 수 있도록, The knowledge triangle(연구, 교육 그리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연합 정책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③ 이전 EU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못한 문제, ④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수공예기업(craft businesses), 가족기업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문화가 자연발생적인 협동조합이므로 사회적 포섭과 자영업(self-employment)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⑤ 중소기업을 호도하는 비즈니스 디렉토리 회사(business directory companies)와 같은 국경을

6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18.

6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2008/2237(INI))

넘나들면서 행하는 불합리한 상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한 문제, ⑥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중소기업은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부문으로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 및 순응비용, 재정 및 시장 접근, 혁신 및 환경에 직면한 사실, ⑦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과 위험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사실, ⑧ 국제화를 시작하는 중소기업들은 국제화 경험 부족, 경험 있는 인적자원의 결핍, 매우 복잡한 국제적 규제, 조직과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정보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 ⑨ 의회는 유럽중소기업현장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함을 종종 아쉬움으로 남겨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들을 열거하였다.⁶³⁾

II. 주요내용

결의안은 크게 일반, R&D와 혁신촉진, 시장의 접근성 향상, 관료주의와 관료적 행정주의(red-tape)타파, 지속성의 업무접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열거하여 총 91개의 결의사항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결의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일반

(1) SBA의 이행촉구

결의안에서는 우선, 집행위원회의 SBA를 지지함을 밝히고, SBA가 법적 구속장치는 없지만 유럽연합의 입법과 회원국의 입법에 적절히 적용되기를 촉구하였다. 특히 국가 및 지역차원의 10가지 원칙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실행을 촉구하였다.

63) European Parliament, *Ibid.*, p. 2-3.

(2) 소규모 중소기업 지원

EU,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수공업, 가족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기업에 대해 주안점을 강조하고 위원회와 회원국에 특별히 이들을 표적화한 규제, 행정, 재정, 평생학습 조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유업(liberal professions)의 특별한 특징을 인정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기존 법률에 반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소기업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 처우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상인, 수공업 비즈니스 및 다른 직업에 대한 중소기업 협회(SME associ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위원회와 회원국에게 이런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및 그들의 직업과 산업 협회에 대한 법적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3) 여성기업 지원

정보의 차이, 계약과 네트워크 접근 부족, 성차별과 고정관념, 육아 시설 공급 부족, 비즈니스와 가족 의무에 대한 조화의 어려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기업가정신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로 여성들은 회사 설립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EU 가용 노동자와 기업가를 잃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금이 여성 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기업가정신이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 및 경제·사회적 직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4) 창조산업의 중요성

불안전한 근로조건에 종종 직면하는 창조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경제적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위원회와 회원국에 EU내 경제·사회 발전 동력으로 창의성과 문화와 관련된 부문의(cultural sector) 중요성을 강조하면서,⁶⁴⁾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창조 부문 강조와 지속적인 지역 고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다.

(5) 부가가치세율의 축소

결의안에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노동집약적이고 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축소지침에 대한 위원회의 도입 계획(Commission's planned introduction)을 지지하면서, 정부 보조(state aids)에 대한 일괄 면제(general block exemption)와 유럽 개인기업을 위한 법규 및 부가가치세율(VAT) 축소 조치의 신소한 채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VAT) 축소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특히 지역 중소기업인 지역 기업에게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기회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에 정보 보조금 규칙 완화를 촉진하였다.

2. R&D와 혁신의 촉진

(1) 연구와 혁신의 중요성

결의안에서는 연구기회 활용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국가 과학 및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과 연구 장벽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하이테크 혁신뿐 아니라 저·중 기술수준 그리고 정보혁신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에게 중소기업이 연구에 대한 접근 장애를 낮추는 계획(initiatives)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와 기술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국경을 초월

64) GDP의 2.6% 및 EU 노동력의 2.5%의 차지 ; ICT 부문과 창조산업의 촉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위원회와 회원국에 지적재산권(IPR) 보호 향상과 EU 전반에서 효과적인 위조(counterfeiting) 방지를 위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체제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적절한 IPR 당국의 지원을 통하여 권리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IPR를 통한 자금 충당을 위해 중소기업의 IPR보호 지원 필요성 강조하였다.

한편, 특허권은 혁신기업으로 하여금 혁신 투자로부터의 결실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 지분 및 대출에 대한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하므로, 혁신 및 경제적 실적에서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단체 특허 소송 시스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채택된, 저비용이고,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에 관해서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3) 중소기업간 협력

SBA에 중소기업간 협력방식에 대한 고려를 요구(구매 및 마케팅 그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개별 기업보다 파산 위험이 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방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공공구매의 확대

비영리 공공구매는 공공기관과 시민과의 계약, 그리고 사업착수의 참여에 대한 부가가치로 이어지므로, 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이 혁신적인 공공구매의 양을 늘리고, 공공구매 절차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도록 촉구하면

서, 이 분야에서의 확산을 원활히 하도록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입찰기준 및 절차와 리스크 및 지식 공유에 대한 배려가 이에 해당된다.

(5) 숙련인력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충분한 기술인력 및 숙련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숙련인력 등의 양성을 위하여 자영업,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지식 증진 등이 국가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기관 및 중소기업 사이의 연결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⁶⁵⁾

특히, 개인교습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기업가 및 여성 기업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수의 여성과 짧은 기업가들의 중소기업 종사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중,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기업의 경우에 업종전환 및 승계와 관련하여 정형화 및 편견의 악영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영향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특히 업종전환을 위한 진단, 정보, 조언 및 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적절한 정책 및 메커니즘을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6) 자금지원의 중요성

유럽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의 주요출처는 그들의 활동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장하고 회사 내에 이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본을 강화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위원회 및 회원국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자금 및 자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활동을 시작하기

65) 특히, “짧은 기업가를 위한 교육철학” 그리고 “초심자를 위한 교육철학”과 같은 개인의 직업이동 구조, 특히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대를 장려하였다.

전에 대출 수수료의 지급은 요구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금융시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벤처 자본, 투융자 복합형태의 금융기법(mezzanine finance)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유럽의 리스크 자본 시장을 개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담보로 인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와 실질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하도록 유럽투자은행에게 촉구하였으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국의 은행이 보증하도록 장려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

(7) 대금지급기간의 축소

결의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실패하는 4가지 경우 중 하나는 대부분 공공관리 부문에서의 늦은 대금지급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거래에서의 늦은 대금지급과의 투쟁에 관한 2000년 6월 29일자의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2000/35EC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한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공공관리 부문에서의 대금지급 문화를 개선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금지급의 기간제한의 설정과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 부과를 촉구하고 있다.

3. 시장의 접근성 향상

(1) 표준화 향상

결의안에서는 표준화가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으로의 접근성과 표준화 절차에 대한 참여를 높이도록 위원회에 촉구하였으며, 유럽공동체의 표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2) 공공구매의 접근성 향상

공공구매가 유럽공동체 GDP의 약 17%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공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참여를 강화하도록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전자구매(e-procurement)⁶⁶⁾의 이용 확대, ② 대규모 계약의 채택, ③ 입찰에서 행정 및 금융부담의 완화, ④ 입찰에 적용되는 적절한 품질 기준의 도입, ⑤ 공공입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중소기업에게도 확대, ⑥ 요구되는 서류의 합리화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에게는 ① 계약분할의 금지, ② 입찰 공시에 대해 컨소시엄으로 응찰할 수 가능성 확대, ③ 공공구매에 있어서 대금 선지급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치할 것을 장려하였다.

(3) 법인세의 공통기준 적용

결의안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공통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원산지 증명 시에 기업들이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에서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일괄처리창구(one-stop-shop)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관료주의와 관료적 행정주의(red-tape) 타파

(1) 관료적 형식주의의 타파

결의안에서는 현대적 행정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적어도 25%의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지식의 증진을 돋고,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였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혁

66) 구매 및 조달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주는 인터넷 구매조달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요청, 적격업체 심사, 입찰 참가 신청, 낙찰자 선정, 계약, 보증서 제출 업무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신정책을 교환하도록 장려하며,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관리기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구비하도록 촉구하였다.

(2)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의 시행

결의안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흔히 “중소기업 테스트”로 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적이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유럽공동체의 법체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에는 중소기업의 행정관리적 부담을 포함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기존 법령의 단순화 그리고 유예 중인 제안의 철회를 포함하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공동체의 법령에 대한 모든 새로운 제안에 중소기업 테스트를 적용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하였으며, 회원국에게도 각 국가 별로 유사한 중소기업 테스트를 도입할 것을 장려하였다.

(3) 정책결정에의 참여

결의안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 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간은 모든 공동체의 언어로 표기하며, 심의가 가능한 날짜로부터 최소 12주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대표기관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정책에 관련되는 경우, 중소기업 및 그들의 대표기관을 전문가 심의 위원회 및 고위층 그룹에 직접 참여시키도록 위원회에 촉구하였다.

(4) 행정처리의 부담감축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 내에서의 회사법, 특히 회계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의무적인 통계조사로부터 영세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통계조사 휴일”의 설정을 장려하였다.

금융규정에 있어서는, 유럽 공동체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금융규정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관료주의적이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5) 창업절차의 간소화 등

각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창업시스템의 결과로 창업의 절차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절차가 수행되고 48시간 이내에 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기업 설립을 위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은 창업단계를 용이하게 하고 운영기간 동안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여, 행정관리 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5. 지속성의 업무접목

(1) 환경 친화적인 혁신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친환경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며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자산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방법이나 환경친화적인 해결책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고, 이를 갖추기 위한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원과 에너지에 더 효율적이 되도록 공동체가 지원하는 방법을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촉구하였다.

(2) 수평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결의안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평적인 연결,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환경관련 법률에의 대처

중소기업이 환경관련 법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기관 수수료를 줄여주거나, 환경 기준에 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거나, 또는 유럽공동체의 법령으로부터의 특별한 예외규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시행되고 있는 환경법률 대응방법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제 1 절 SBA에 대한 평가

I . ‘SBA Review’ 추진배경

EU 집행위원회는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이하 ‘SBA Review’라 함)’을 2011년 2월 23일 발표하였다.⁶⁷⁾

이 보고서는 SBA가 처음 2년 동안 이룬 진척들을 개관하고, 경제 위기 이후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분명한 역할에 대한 사항과 SBA의 견인과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이 보고서는 SBA의 시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조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II . SBA 시행경과와 평가

집행위원회에서는 SBA 시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용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⁶⁸⁾ 특히,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이 재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들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유럽의 민간 기업을 위한 정관을 제외하고는 SBA에서 제안하였던 모든 법률적 이니셔티브들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항을 보면, ① ‘온라인 송장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온라인

6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for the regions,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11. 2. 23.

68) Commission, SBA Review: What has been done and what is to be done for Europe’s SMEs, 2011. 2. 23.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송장을 지면으로 발행된 송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에 도움이 되었다. ② 2백만 유로 미만의 자금 회전력을 가진 기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금지급을 받을 때까지 부가 세 지불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인 현금 회계 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③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안전보장 장치의 하나로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 이외의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달성되었는데, ① 지금까지 10만개의 중소기업이 CIP 금융 수단의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20만 개의 추가 중소기업이 2013년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② 중소기업은 정부조달에 접근할 때 좀 더 가벼워진 행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합동 입찰의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③ 중소기업이 제3국가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2010년 11월 중국에 유럽 연합 중소기업청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④ 집행위원회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을 그 혁신과 연구 정책의 중심에 둔 것에서 발생된 것이며, 향후 집행위원회의 지향점은 기업인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⁹⁾

III. SBA 원칙별 실천사례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 Review 발표와 함께 SBA 10대 원칙에 대한 실천사례를 발표하였다.⁷⁰⁾ 이하에서는 이 발표내용을 정리하였다.

1. 제1원칙 : 기업가 정신의 고취

많은 회원국들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젊은이들의 기업가적인 태도와 기술들을 교육하고 학교와 대학의 교육 과정에 기업

69) Commission, *Ibid.*, p.2.

70) SBA successfully supports entrepreneurship and small enterprises, Brussels, 2011. 2. 23.

정신을 통합하거나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을 구성함으로써 그들이 창업 가능성을 배양하고 있다.⁷¹⁾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보면, 첫째, 프랑스에서는 「자영기업법(2009)」을 통하여 모든 국민(실업자, 취업자, 공무원, 연금생활자)이 쉽게 창업하고 처음 3년간 세금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5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창출되었다.

둘째, 루마니아에서는 청년(18세에서 35세)창업 프로그램에서 기업 가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지원하였다.⁷²⁾

셋째, 스웨덴에서는 여성기업가들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2007-2010)을 운영하여, 창업지원서비스와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 홍보대사들의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2009년 이래 유럽 여성 기업 홍보대사들의 네트워크로 변형되었다.

2. 제2원칙 : 재기의 기회 제공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에 관한 원칙에는 5개 회원국(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이 따르고 있다. 즉, 고의성이 없는 파산의 경우 기업청산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들을 1년 내에 완수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보면, 첫째, 벨기에에서는 「기업의 연속성에 관한 법률(2009)」에서 지급불능이나 조기 파산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들에게 채무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모라토리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1) 일부 국가들은 여성 기업을 장려하는 각국 혹은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몇몇 회원국들은 상당한 양의 구조적 자금들을 이들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72) 2009년 지원금 1천 9백만 유로와 시행기관을 위한 자금 2백 1십만 유로를 합친 2천 1백 2십만 유로의 예산.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둘째, 에스토니아에서는 2008년에 채택된 「재조정법」을 통하여 한시적인 지불능력 문제의 경우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파산 진행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

3. 제3원칙 :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몇몇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에서 중소기업 테스트를 정책결정방법에 수렴하였다.

실천사례로는 첫째, 독일의 경우 2009년 중소기업을 위한 관료주의적 장벽의 간소를 위하여, 23개의 관료주의적인 절차들이 간소화되었다.

둘째, 2010년 4월 이탈리아에서는 SBA시행에 따라 권고 사항을 채택했고, SBA의 시행을 모니터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각료, 의원, 기업 단체, 지방, 유럽 경제 사회 집행위원회의 이탈리아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했다.

4. 제4원칙 : 수용적인 행정

헝가리 행정부는 간소화된 전자 절차들과 함께 회사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사무소를 제공하였다. 2008년 이후 전자 절차이용은 의무화되었고 기업을 설립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한 시간으로 축소되었다.

포르투갈의 “Simplex” 프로그램은 행정적인 과정, 절차, 실천들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이래 블로그를 통해 공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제5원칙 : 공공 조달에의 접근성 확대

소수의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원칙을 법령에 수렴하였다(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폴

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영국의 경우, 정부 웹 포털⁷³⁾에서 공공 부문의 계약을 공고하고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고, 2008년 조달청은 공공 부문 계약을 위한 경쟁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장벽들을 줄이기 위한 12개의 추천 사항을 발표했다.

6. 제6원칙 : 금융에의 접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시스템(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이나, 소액금융 공동기금(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채택했다.

공적지원 이외에 벤처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경우도 있다(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특히, 벨기에,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와 좀 더 최근에 핀란드가 “신용 옴부즈맨”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몇몇 회원국들은 대금지불 지연 지침들을 재조정하였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대금지불 지연을 저지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에 스페인은 공적 대금 지불에 30일과 기업간 지급에는 60일 기한을 정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7. 제7원칙 : 단일시장 지원

단일시장 지원을 위하여 22개 회원국에서 원스톱 사무소(단일 계약 조항들)를 설립했다. 서비스 공급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73) Supply2.gov.uk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할 때 행정서류들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15개국에서는 자국어 외에 영어 웹사이트를 제공한다(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8. 제8원칙 : 기술과 혁신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초기 투자 자금과 벤처 자금을 통해 짧은 혁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 밖에, 다른 회원국들은 혁신 센터나 대학, 연구소, 기업과 연계한 경쟁 거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한편, 중소기업들이 상담 서비스와 노하우들을 살 수 있게 하는 “혁신 바우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9. 제9원칙 : 환경적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

중소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돋기 위해 몇몇 회원국들은 유리한 대출 조건들이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에너지 효용 기금을 제공하였다(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프랑스, 독일 말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2009년에 만들어진 기업 혁신 기금(2010-2012 1 억 유로)을 통해, 덴마크 경제기업부는 녹색 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녹색시장에 대한 사업기회들을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독일, 슬로바키아).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주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녹색사업 기회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10. 제10원칙 : 국제화의 지원

각 회원국에서는 국제화 지원을 위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시장 접근 전략, 무역 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였다(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이 중에는 국제화를 원하는 고성장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경우도 있고(덴마크, 슬로베니아), 새로운 수출 촉진 기구를 설립하거나(룩셈부르크),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헝가리)하기도 하는 등 국제화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험운영은 주목할 만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I .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추가조치 개요

1. 추가조치의 필요성

집행위원회는 SBA가 시행된 이래 많은 정책목표들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SBA 발표당시 집행위원회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고, 약속된 조치들의 대부분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BA는 집행위원회의 이행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할 수 없고, 회원국이 SBA에 수반된 조치들을 얼마나 완전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한편, 경제적인 맥락에서 2008년 이후 많은 상황이 변했고,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현재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를 적절히 전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토대 위에서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단의 새로운 조치들과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서 유럽 2020 전력에 합당한 기준 조치들을 추가로 발전시킬 것을 ‘SBA Review’에서 제안하고 있다.

2. 추가조치 개요

‘SBA Review’에서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추가조치 요구사항

• 유럽의 중소기업을 위한 현명한 규제를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요구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
•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강화하는 폭넓은 접근기반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을 위한 최상의 단일시장 만들 것
- 중소기업이 세계화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중소기업들이 자원 친화적인 경제에 공헌하도록 도울 것
• 기업정신의 고취,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

II. 추가조치사항별 중점방향

1. 규제의 경감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의 원칙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및 행정환경의 간소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지표를 계량화하여, 모든 해당 법안과 정책 제안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철저히 평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테스트”的 활용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테스트”를 적용할 때, 소규모 사업체와 중간 규모 사업체의 차이가 인정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영역을 위한 규정의 기본 틀이 목적에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지침들을 각국 법률로 옮길 때 유럽 연합의 입법 요건들을 초과하는 식의 “도색(골드 플래팅)”을 피하도록 하였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1회 제출(only once)” 원칙의 적용을 촉진한다. 공공기관들과 행정기구들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미 입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 서류, 증명서들의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회계절차에 있어서도 유한 회사들의 연간 통합 회계 유럽 연합에 대한 기본 요건들의 (4차와 7차 지침) 수정으로 유럽 연합 회계 기본 틀을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 이르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투명도와 더 소규모 상장회사들의 보고 요건들을 간소화할 것이다. 더욱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회계 정책에 관한 녹서에 따라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회계 요건들의 간소화를 평가하고 있다.⁷⁴⁾

2. 투자확대 및 금융접근성의 강화

SBA는 상거래에서 기한 내에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성장력 있는 사업 모델과 확고한 고객 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정 상황과 신용 가치가

74)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0/green_paper_audit_en.htm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출조사는 유럽의 몇몇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한 신용기준들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⁷⁵⁾

집행위원회는 금융지원수단을 통하여 영세기업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동시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돋기 위한 중소기업 Guarantee Facility and the RSFF⁷⁶⁾를 포함하는 기존의 혁신적인 금융 도구들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 투자자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 자본 시장 접근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채택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회원국에서든 2012년 까지 설립된 벤처 자본 펀드는 유럽 연합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용 옴부즈맨” 형태의 솔루션들을 개발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유럽, 각 국가, 지역별 중소기업의 지원금이나 금융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원스톱 사무소(one-stop shop)를 개설하도록 한 점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세금처리의 부담이나 이중과제 등 세금의 문제로 인해 국경 초월한 벤처 자본 투자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75) <http://www.ecb.int/stats/money/surveys/lend/html/index.en.html>

76) Risk Sharing Financial Facility, <http://www.eib.org/products/loans/special/rsff/index.htm?lang=en>

3. 시장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구축

(1) 최상의 단일시장 구축

SBA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전자 단일 시장과 유럽 연합 밖의 시장들의 성장을 포함해서 단일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독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유럽 2020전략’은 세계화 시대를 위한 산업 전략의 수립과 새로워진 무역 전략의 확립을 통해⁷⁷⁾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맞서 유럽 연합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자원효율적인 유럽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활동에 착수했으며, Communication “단일 시장 법을 향하여”⁷⁸⁾에서는 단일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들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최상의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국가 간 무역에 종사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 유로 지불 영역(SEPA)은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과 단일 시장 안에서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필요 없이 단순화된 지불 절차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을 밝히고 있다.⁷⁹⁾ 단일 유로 지불 영역(SEPA)은 범-유럽 전자 송장발행의 개발과 중소기업이 그것을 대량 채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집행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사업의 잠재력을 강조해왔다.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영업 관련 소송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현재 B2B와 B2C 상황을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 유럽 연합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 유럽 연합 내에서 대안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혔다.

77) Communication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COM(2010)612, 9.11.2010

78)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mact/index_en.htm

79)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payments/sepa/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최상의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내에서 불공정한 상업 관행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을 상정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CCCTB)’와 단일 시장 안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장벽과 행정적인 부담들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부가세 전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이니셔티브들을 제시할 것을 밝혔다. 표준화에 있어서도, 2011년 유럽의 표준화 시스템의 개정을 수행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회원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법규를 전면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유럽 연합 전역에서 전자 신원 확인과 전자 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과, 전자 서명에 관한 지침의 2011년 개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단일 시장 법안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세계화된 시장에의 대응

세계화된 시장은 유럽 연합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3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이 적절한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외국의 규제와 비관세 장벽과 같은 장애물들과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EU 중소기업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2011년 유럽 연합 외부 시장에서 유럽 연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클러스터와 네트워크⁸⁰⁾를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의 무역 방어 도구(TDI)들의 활용에서 정보와 지원을 늘리고, 혁신된 무역 정책에 맞추어 자유무역의 비관세 장벽들을

80) Commission Communication “An Integrated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Putting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at Centre Stage”, COM (2010) 614.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제3세계 시장들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체 국가 원조와 경쟁 규칙들에 맞게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결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3) 자원효율적인 경제에 기여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과 에너지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의식제고, 관련 법안시행, 환경과 에너지 성능을 평가, 기술과 자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관한 지원을 해 왔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정보, 시간, 인적, 재정적 자원 한계가 있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보조 등 적절한 자금 조달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화에 관한 회계감사를 장려하는 지원책(인센티브)의 개발은 이에 대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을 통하여 자원효율성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Enterprise Europe Network 안에서 환경과 에너지 전문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로 개발하여, 특히, 저탄소 기술 실천에서 결과한 시장 제품 제조 중소기업과 서비스제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Enterprise Europe Network의 중소기업 패널과 중소기업 피드백 데이터베이스는 환경 법안의 시행을 포함해 그 질의 개선을 돋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 하였다.

회원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그들의 사업을 저탄소와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에 적응 시키는 데에 필요한 경영 기술과 과학 기술들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환경 경영과 회계 시스템(EMAS)과 ISO 14,000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인센티브들

제 4 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을 제공하며, 소형 업체들이 “EMAS-EASY”와 같은 간소화된 환경 경영과 회계 시스템(EMAS) 유형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제안하였다.

4. 기업가정신 고취,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중소기업은 유럽연합 내에서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 주체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 중 약 3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행정적인 요건과 절차들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사업 실패의 1/3 가량은 사업 이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향후 10년간 매년 2백만 개의 일자리들을 제공하는 5십만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이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이전을 위한 기본 틀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⁸¹⁾ 따라서 집행위원회에서는 파산 또는 이전 중소기업 재기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2011년 말까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소위 ‘사회적 기업’)⁸²⁾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채택할 계획을 밝혔다.

회원국들에게는 2012년까지 신생기업들의 창업 기간을 3일로 줄이고 비용을 100유로로 줄이라는 내용의 SBA내용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3년 말까지 취득해야 하는 면허와 허가(환경 허가를 포함해서)를 얻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한 달로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까지 정직한 기업인이 파산 후 면책과 채무 조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촉진위한 SBA내용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81)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documents/transfers/index_en.htm

82) 전통적인 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는 다른 사업 모델을 따르는 중소 기업들이 있다. “사회 경제”로 알려진 이런 범주는 비영리 단체, 재단, 협동조합, 호혜적인 단체들, 유사한 법인들을 포함한다. 이런 수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단일 시장 법에서 동등한 활동 영역을 제공할 다수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제 5 장 결 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제 1 절 서 설

이상에서 EU 집행위원회 SBA의 10대 원칙과 86개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EU 의회의 SBA 결의안의 배경과 주요 결의사항 분석, EU 집행 위원회의 ‘SBA Review’를 통한 평가와 전망을 마쳤다.

EU에서는 ‘중소기업헌장’⁸³⁾의 실행이 미비하고, 권고가 회원국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헌장의 한계를 실감하였으며,⁸⁴⁾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SBA를 통하여 10대 원칙을 세우고, 이의 이행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에서는 SBA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제위기 이후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항의 반영, 녹색시장의 지원, 자원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원 등 SBA시행 이후에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향후 추진방향도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체에 적합한 프레임웍을 만들어 회원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EU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몇 개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기

83) EUROPEAN CHARTER FOR SMALL ENTERPRISES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documents/charter/index_en.htm)

8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2008/2237(INI)), p.3.

간 등의 한계로 SBA 자체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하였으며, SBA가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이므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 2 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I.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1.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집행위원회는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대출가능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인식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금융지원수단을 통하여 영세기업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동시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돋기 위한 중소기업 Guarantee Facility and the RSFF⁸⁵⁾를 포함하는 기존의 혁신적인 금융 도구들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 투자자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 자본 시장 접근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채택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절차에서는 자금지원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사무실의 개설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이 컼고, 최근까지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까지

85) Risk Sharing Financial Facility, <http://www.eib.org/products/loans/special/rsff/index.htm?lang=en>

발생하는 등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이 기존의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EU의 경우에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용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신용 옴부즈맨 제도는 SBA Review에서 제시된 사안으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거나, 정부 지원자금을 받고자 할 때 서류절차들의 처리를 어려워하고 있고, EU에서도 신용 옴부즈맨 제도가 금융접근성의 강화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또는 기금 운용기관 간의 매칭이나 서류절차 대행, 또는 자금구성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를 보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2009년 도입되어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⁸⁶⁾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옴부즈만 등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애로사항 접수와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신용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입법례를 보아야 할 것이나, SBA의 권고 취지에는 동감하는

86)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3월 27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바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자원효율화 및 녹색시장에 대한 지원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이 환경적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SBA의 원칙과 Review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런 추세는 현재 중소기업이 녹색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전문 기술과 금융의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서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이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녹색시장(green market)’과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의 기회를 완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는 EU의 정책은 기후 변화, 에너지 공급의 부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은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업모델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맥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SBA Review에서도 친환경적(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처에 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에도 EU의 중점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령을 보면, 우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던 (구)「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것으로,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2011년 6월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으로, 주로 녹색제품의 구매사업자,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SBA의 경우와 같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세지원, 사업자금 등 보조금 우선지급), 기술개발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제15조의 4에서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를 규정하고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3조의 ‘중소기업의 지원 등’의 규정을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②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③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④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⑤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공급 및 국외진출, ⑥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규정일 뿐, 구체적인 지원사항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녹색시장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I.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1. 재창업지원제도의 보완

SBA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파산자에 대한 법적인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방식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의성이 없는 파산의 경우

사업정리절차를 1년 내에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 SBA Review에서도 2013년까지 정직한 기업인이 파산 후 면책과 채무 조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촉진위한 SBA 내용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파산중소기업의 재기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정책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⁸⁷⁾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기존의 ‘벤처패자부활제도’에서 실패한 벤처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에서는 실패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창업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EU의 경우와 같이 정리기간의 단축, 재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신규창업자와 동일한 처우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파악되지 못하였다.

법적인 근거의 측면에서 보면, 명시적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의 규정에서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구분

전술한 바와 같이 SBA에서는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나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87) 재창업지원제도는 그간 운용해 왔던 ‘벤처패자부활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제도는 물론 법제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파산의 ‘고의성’ 여부는 지원대상 판단기준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자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악의적인 파산절차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에 따른 파산선고 확정 이후의 면책에 관한 사항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

파산법상의 면책자에 대한 면책결정 신용정보의 기간단축과 관련하여, 파산면책자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 채무상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 악의적인 파산절차 이용자도 기간단축을 받게 되어 파산절차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있음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실한 채무자의 일시적인 경제활동의 곤란, 또는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산 등의 이유로 기간단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기간단축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⁸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이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⁸⁹⁾ 따라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

88) 대법원 1999. 8. 16. 자 99마2084 결정 참조.

89)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⁹⁰⁾

결국 이러한 기준에 의해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악용한 자인지를 판단해 내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여부를 가지고 남용여부를 판단해 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파산법(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⁹¹⁾에 따라 ‘변제자격조사(means testing) 제도’⁹²⁾가 도입되어 변제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는 제7장에 규정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제13장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파산남용방지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창업지원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구분지원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행정부담의 경감

1. 창업절차의 간소화

SBA Review에서는 2012년까지 신생기업들의 창업 기간을 3일로 줄이고 비용을 100유로로 줄이라는 내용의 SBA내용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3년 말까지 취득해야 하는 면허와 허가(환경 허가를 포함해서)를 얻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한 달로 줄이도록 하였

90) 전병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2009. 10, 184쪽.

91)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 BAPCPA

92) BAPCPA §707(b)(2).

다.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및 행정환경의 간소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사항이 입법되어 있는데, 「창업지원법」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승인의 의제처리, 「벤처기업법」 상의 기업인수합병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과 「사업전환촉진법」 상의 사업전환을 위한 인수합병절차 간소화 규정을 대표적인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법률간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나, 중복적인 자료제출의 요구 방지, 전자적인 수단을 통한 절차의 완성 등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시스템 적용

SBA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 내에서의 회사법, 특히 회계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회계절차에 있어서도 유한 회사들의 연간 통합 회계 유럽 연합에 대한 기본 요건들의 수정으로 유럽 연합 회계 기본 틀을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위원회는 회계 정책에 관한 녹서에 따라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회계 요건들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회계 시스템의 문제는 인식되고 있다. 비단,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감사 규정이 미약하여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문제 이외에도,⁹³⁾

93) 자산 100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자의적 회계처리 등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무제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 지적되었다.

20011년부터 외감대상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EU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 요건 간소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중복적 자료제출 방지

SBA와 그 Review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1회 제출(only once)”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들과 행정기구들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미 입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 서류, 증명서들의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의무적인 통계조사로부터 영세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통계조사 휴일”的 설정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EU에서는 중소기업의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 관련 각종 법률에서 자료조사,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이 입법되고 있다. 이를 규정을 각각 고유의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겠으나, 응하게 되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계 작성시에 중복적인 제출을 방지하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전자자료를 활용하거나, 타 부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EU 의회의 결의안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흔히 “중소기업 테스트”로 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적이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영향 평가에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 정책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평가에 기업간 사업규모의 차이, 정책영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계량화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것도 제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법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규제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애로도 과중⁹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규제영향분석작성지침(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면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③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④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⑤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⑥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⑦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⑧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94) 기업규모에 따른 매출액대비 규제비용 부담비율 : 20인 미만(10.9%), 20~50인 (4.6%), 50~100인(2.8%), 100인 이상(3.3%), 기은경제연구소, 2008. 5. 자료 참고.

신설되는 규제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규제인 경우에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검토의견⁹⁵⁾을 해당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훈령수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규제나 강화되는 규제에 적용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절차상 계량화된 기준의 정립이나, 기업간 규모의 차이에 대한 고려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법령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존 법령의 단순화, 유예 중인 정책에 대한 검토 등에도 적용되도록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이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평가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규제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5)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비용을 유발하는지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방법)등의 규제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대순, “마스트리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2호, 1994.
-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 박노형, “EC입법-EC규칙의 법적 분석”, 법학논집 제2집, 고려대학교, 1993.
- 박덕영 외, 「EU법 강의」, 박영사, 2010. 9. 15.
- 박지순, “유럽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관련 입법지침의 개관”, 국제노동 브리프, Vol. 3 No. 8, 2005. 8.
- 법무부, 「유럽연합의 통합체제」, 2000.
- 서정대,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 EU위원회의 중소기업을 위한 결의”, 중소기업연구원, 2008. 10. 31.
- 신용대,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관련법규의 내용과 시사점”, 법제 연구, 제6호, 1994. 6.
- 심재한, “EU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사례”, 「EU중소기업법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6. 22.
- 이광윤, “유럽연합의 소송”, 2007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12.
- 이병준, “스팸메일의 법률적 규제: 유럽연합입법지침과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정보, 제7호,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1. 3.
-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1997.

참 고 문 헌

-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 전병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2009. 10.
-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4. 12.

<외국문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ink Small First”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5. 6. 2008 COM, 394 final, 2008.

Commission Communication “An Integrated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Putting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at Centre Stage”, COM (2010) 614. 2010.

Commission, SBA Review: What has been done and what is to be done for Europe's SMEs, 2011. 2. 23.

Communication,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COM(2010)612, 9. 11. 201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for the regions,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11. 2. 2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clusions on the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3094th COMPETITIVENESS

(Internal Market, Industry, Research and Space) Council Meeting
Brussels, May 30, 2011.

Henrik Frykman & Ulrika Morth, Soft law and Three Notions of Democracy: The Case of the EU, in Soft law in governance and regulation: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155, Ulrika Morth ed., 2004.

Josephine Steiner & Lorna Woods, Text Book on EC Law, 8th ed., 2003.

Linda Senden, Soft Law in European Community Law, 2004.

Paul Craig & Grainne De Burca, EU Law, 3rd ed., 2003.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on “Models to Reduce the Disproportionate Regulatory burden on SMEs”, May 2007.

Sean D. Murphy, Principles of Internaitonal law, 2006.

<인터넷 자료>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analysis/_observatory_en.htm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urvey/eurobarometer_intro.htm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08DC0394:en:NOT>

<http://eur-lex.europa.eu/JOIndex.do>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intm/122326.pdf

http://ec.europa.eu/enterprise/entrepreneurship/docs/SME_public_procurement_Summary.pdf

참 고 문 헌

<http://www.enterprise-europe-network.ec.europa.eu/>

http://ec.europa.eu/solvit/site/index_en.htm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0/green_paper_audit_en.htm

<http://www.ecb.int/stats/money/surveys/lend/html/index.en.html>

<http://www.eib.org/products/loans/special/rsff/index.htm?lang=en>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mact/index_en.htm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payments/sepa/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documents/transfers/index_en.htm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documents/charter/index_en.htm

<http://www.eib.org/products/loans/special/rsff/index.htm?lang=en>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charter/docs/charter_en.pdf

http://ec.europa.eu/enterprise/admin-burdens-reduction/home_en.htm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analysis/_observatory_en.htm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urvey/eurobarometer_intro.htm

http://ec.europa.eu/enterprise/entrepreneurship/docs/SME_public_procurement_Summary.pdf

<http://www.enterprise-europe-network.ec.europa.eu/>

http://ec.europa.eu/solvit/site/index_en.htm

참 고 자 료

- 유럽 중소기업 협회
- 유럽 ‘중소기업법(SBA)’

유럽 중소기업 현장

중소기업은 유럽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 근원지이며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온상이다. 중소기업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져야만 신경제를 맞이하려는 유럽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소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과도한 행정절차(관료주의적 행정절차)로 억압받는다면 중소기업은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또한 형식적인 절차(관료주의)를 생략하고 성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변창할 것이다.

리스본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화합을 이루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정하였다. 중소기업은 유럽의 혁신, 고용, 사회적/지역 통합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Principles

-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동적 역량 인지
- 사회적/지역적 발전 육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성 강조
- 책임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 있고 생산적인 생활기술로 기업가정신 인지
- 보상받을 자격이 되는 성공한 기업에게 확실한 보상
- 실패는 책임이 따르며 위험부담을 함께 수반하며 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을 고려
- 신경제에 대한 지식, 혁신, 적응성(융통성)의 가치 인지

참 고 자 료

기업가정신 활성화, 기존 정책 평가,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과 정책 입안자들이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따름:

- 유럽 비즈니스가 향후 난국에 직면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의미 강화
- 기업가의 지위를 개선하고 기업가적 활동의 규제/재정적/행정적 체계 달성
- 공공정책의 목표를 보다 중요시하면서 가장 부담이 적은 필요조건에 근거하여 시장 접근 보장
- 최고의 연구와 기술의 접근 용이
-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자금조달의 접근 향상
- EU가 전 세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적(성과) 향상
-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 추진

Lines for action

1. 기업가정신 배양을 위한 교육 · 훈련

유럽은 예전부터 기업가적 정신과 신기술을 육성해 왔음, 모든 학교 수준에서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교육되어져야 함.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사업의 필수요소로 특별 비즈니스관련 모델을 수립해야 함

우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적정신 함양과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사업을 개발해야 함

2. 저렴하고 신속한 창업

회사 창업에 따른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도록 발전해야 함. 신규회사 승인 절차가 길고 복잡한 나라들은 가장 신속하고 간소한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도록 권고해야 함.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승인 비중을 높여야 함

3. 개선된 법안과 규제

국가파산법(National bankruptcy law)은 선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함. 벤치마킹 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EU 내의 현재실행을 증진시켜야 함

국가 그리고 연합 차원에서의 신규규제는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함

중소기업은 특정 규제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즉,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쟁법(경쟁제한법, 공정거래법)을 단순화 할 수 있음

4. 기술의 접근 용이성

우리는 중소기업의 니즈에 상응하는 기술를 전달하기 위해 내부 훈련사업의 보완으로 훈련기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생 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함

5. 온라인 접근 개선

공공단체가 중소기업들과 그들의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야 함. 이에 회사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세금환급 또는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정보를 획득

참 고 자 료

득하여 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을 소비하게 됨. 이러한 부문은 위원회가 선행해 나가야 함

6. 권역내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

중소기업은 진행중인 유럽경제개혁으로부터 오는 장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와 회원국은 진정한 권역시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친숙하고, e-commerce, 통신, 공익사업, 공공조달 그리고 국경을 넘는 지불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영역에 대한 개혁이 추구되어야함.

7. 조세와 금융 문제

조세제도는 성공에 대한 보상, 창업 장려, 중소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상응하고, 중소기업내 사업승계가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함. 회원국들은 선례를 조세와 개인성과 인센티브에 적용하여야 함

기업가는 야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함. 중소기업이 자금 서비스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

- pan-European capital market을 창설하고 자금서비스액션플랜(Financial Service Action Plan)과 위험자금 액션플랜(Risk Capital Action Plan) 시행하기 위해 장벽을 식별하여 제거
- 신용보증과 벤처캐피탈의 적절한 접근 조건을 만들어서 은행 시스템과 중소기업간 관계 개선
- 유럽구조기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주식증서를 포함한) 창업 기업과 하이테크기업의 자금 충당을 제고하기 위한 유럽투자은행의 계획(initiatives)을 환영

8.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우리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급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사업 강화와 기술을 식별, 채택 그리고 적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우리는 서로 다른 회사규모간 특히 유럽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며, 지식과 기술의 상업적인 적용을 토대로 하는 더욱 효율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게 품질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할 것임. 중소기업에게 연합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성 보장이 중요

우리는 지역, 국가, 유럽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회사간 협력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고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 협력을 조성할 것임

그러므로 회사간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및 지역수준의 액션은 지원되어야 하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중소기업간 pan-European 협력 증대, 협력동의에 대한 선례 보급, pan-European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과 제3국 시장으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9. 성공적 e-business 모델과 상위(top-class) 중소기업 지원

위원회 및 회원국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환경 아래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적용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우리는 정보와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회원국과 EU 활동을 통해 협력할 것이다. ; EU 전체가 멘토 그리고 비즈니스 엔젤, 유럽중소기업전망(European Observatory on SMEs)을 활용하여 지도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참 고 자 료

10. EU연합 및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더욱 강력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

우리는 어떻게 중소기업 이익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EU 및 국가 수준에서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완비할 것임

우리는 국가적 기업정책 협력에 개방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진척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다양한 기업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경제 개혁에 대한 카디프 프로세스(cardiff process), 고용정책에 대한 룩셈버그 프로세스(Luxembourg process), 그리고 다른 연합조직 프로그램과 계획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매년 춘계회담(spring summits)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위원회 리포트(Commission report)를 기초한 진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것이다. 우리는 효율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진척 사항을 평가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례와 비교하여 우리의 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선례를 발굴할 것이다.

유럽 “중소기업법(SBA)”

1. 서 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은 오늘날 유럽 연합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성공한다면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들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집과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가 보장될 것이다.

역동적인 기업가들은 특히 가속되어 있는 세계화와 기술적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잠재력을 확고히 하는 우리의 능력이 유럽 연합의 미래 번영에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구조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경쟁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전 지구적 변화의 풍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과 지역 공동체의 복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중소기업들은 오늘날의 글로벌화 된 세계 속에서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도록 유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은 특히 2005년 이래 동반자적 접근법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리스본 성장과 일자리 전략의 핵심에 두었고¹⁾ 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을 이루었다. 이제는 유럽 연합 정책의 최전선에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공고히 하고 유럽 연합을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계 수준의 환경으로 만든다는 2000 유럽연합 국가 정부 수반들의 비전을 현실로 옮길 때이다.²⁾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각국의 환경과 각 지방의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그로 인해(수공업, 소형 기업, 가족 소유 기업과 사회 경제 기업

1) “Implementing the Community Lisbon Programme - Modern SME policy for Growth and Employment”, COM(2005) 551 final, 10.11.2005.

2)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charter/docs/charter_en.pdf

참 고 자 료

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성격 자체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다루는 정책들은 이런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조의 원칙들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2. 유럽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시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의 현대적 중소기업 정책³⁾에 관한 중간 보고는 회원국들과 유럽 연합 모두 중소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에서 진척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연합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들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0년 페이라에서 조인된 ‘유럽 중소기업 협약’의 맥락에서 교환된 최선의 실천들에 자극을 얻었고, 2006년 봄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들, 예를 들어, 회사 등록을 위한 원스톱 사무소의 도입과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은 결정들을 시행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더욱이 더 나은 법규⁴⁾를 위한 유럽 연합의 전략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기존 유럽 연합의 법률들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여 2012년까지 유럽 연합의 법률에서 생기는 행정적 부담의 25%를 경감하겠다는 야심 찬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고무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 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⁵⁾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경쟁

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Key for delivering more growth and jobs. - A mid-term review of Modern SME policy”, COM(2007) 592 final, 4.10.2007.

4) http://ec.europa.eu/enterprise/admin-burdens-reduction/home_en.htm

5) “Impact Assessment on the 중소기업법(SBA)”, SEC(2008) 2101.

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고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한다. 미국에서 생존 기업들은 7년 내에 평균적으로 60%에 이르는 고용을 증대하는 반면 유럽 생존 기업들의 고용 성장은 10%에서 20% 수준에 머문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금융(특히 벤처 자본), 연구, 혁신,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조건들을 저해하는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21% 가량이 자금 조달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⁶⁾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의 초소형 업체들의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더 높다. 또한 대기업들과 비교해 유럽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혁신을 수행한 경우는 훨씬 더 드물다. 운영 기술과 과학 기술들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들과 각국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여전한 경직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최고 정치 차원에서 거듭 인정되어왔다. 2008년 3월 유럽 이사회는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이를 바 유럽 “중소기업 법(SB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고 이것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단일 시장 평가⁷⁾ 역시 더 나은 결과와 더 많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오늘날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단일 시장을 좀 더 잘 재단하기 위한 추가 이니셔티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법(SBA)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공개 청문회와 온라인 상담은 유럽 중소기업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할 중요한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사실이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유럽 “중소기업법(SBA)”을 제출하기 위한 결정적 행보를 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6) 2007 Observatory of EU SMEs.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analysis/observatory_en.htm

7) “A single market for 21st century Europe”, COM(2007) 724 final, 20.11.2007.

3. 중소기업들을 위한 야심 찬 정책 현안의 추진 : 유럽 “중소기업법(SBA)”

유럽 중소기업법(SBA)의 핵심에 놓인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최선의 기본 조건들을 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확신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선택이 매력적이라고 여기게 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이 고용 성장과 경제 번영에 실질적으로 공헌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로서 유럽 연합 안에서 기업과 위험의 감수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그에 따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는 정치 지도자들과 미디어의 찬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규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신, 곧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친화적이 되는 것이 주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법(SBA)”이 기업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접근을 개선하고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을 법규에서부터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남은 문제들과 맞서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중소기업법(SBA)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들의 정책 달성 위에 확립되고 기존의 기업 정책 도구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기본 틀을 만들고 특히 유럽 중소기업 현장과 현대적인 중소기업 정책 위에 확립된다. 이 야심 찬 정책 현안을 시행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 사이에 보조와 균형을 존중하는 진정한 정치적 동반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아니셔티브에 주어진 “법(ACT)”이라는 상징적인 명칭은 유럽 연합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유럽 연합과 회원국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다:

유럽 연합과 회원국 수준에서 모두 정책의 착상과 시행을 안내할 10개 원칙.

4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이 원칙들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부가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데에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동일한 활동의 장을 만들고 유럽 연합 전역에서 법률적 행정적 환경을 개선한다.

- I.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II.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 III. “작은 것 먼저 생각하라” 원칙에 따라 법규를 설계한다.
- IV.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 V.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공공 정책 도구들을 조정한다 : 공공 조달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가 원조 가능성들을 더 잘 활용한다.
- VI.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거래에서 적기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과 사업환경을 발전시킨다.
- VII. 중소기업들이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 VIII. 중소기업들의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모든 형태의 혁신을 촉진한다.

참 고 자 료

IX. 중소기업들이 환경적인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다.

X.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한다.

“작은 것 먼저 생각하라” 원칙에 인도되는 새로운 법률안들: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n State Aids (GBER)

조속한 시일에 채택될 이 법규는 중소기업 원조 분야에서 기존 법규들이 이미 포괄하고 있는 국가 원조의 이전 통고 범주들로부터 훈련, 고용, 연구개발과 지역 원조와 새로운 원조 범주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새로운 법규는 중소기업들에 관한 기존 법규들을 간소화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투자 원조를 증대할 것이다.

유럽 민간 기업(SPE)을 위한 법령에 제공된 법규

이 법규는 유럽 민간 기업을 위한 법령을 위해 준비한 것이며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단일 원칙들에 따라 운영된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이 새로운 회사 형태가 기존의 법인 조세 지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수정 법안들을 제출할 것이다.

부가세율 감면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조만간 제출될 것이며 회원국들에게 주로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지역적으로 적용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율 감면 적용이라는 선택 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법(SBA)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준비될 것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기준 법규들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고 그 법규들과 조화를 이루는 법률안

중소기업들이 어떤 상업적 거래에서도 적기에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전망하는 대금지급 자연에 관한 지침 2000/35/EC의 수정

공동체와 회원국 수준 모두에서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10개 원칙을 시행하는 새로운 일단의 정책 수단들

4. 원칙을 정책활동으로 전환

I.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할 수 있고 기업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특히 젊은이들과 여성 사이에서 기업가적인 관심과 재능을 조장하고 기업이전을 위한 조건들을 간소화함으로써 미래의 기업가들을 더 잘 돌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2007 *Flash Eurobarometer*⁸⁾은 미국인의 61%가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데 비해 유럽인의 45%가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여러 해 동안 변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사람들은 자영업이 잠재적으로 매력적인 직업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야심을 성공적인 벤처 기업으로 바꾸는 데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교육 시스템과 특히 학교의 교육 과정은 기업가 정신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교육의 첫 단계부터 적절한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다.

향후 10년 동안 6백만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은퇴하게 됨에 따라 유럽은 단지 사업 양도의 어려움과 가족 사업의 전통적인

8)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urvey/eurobarometer_intro.htm

참 고 자 료

역할에 대한 평가의 부재 때문에 이들 업체를 잃는 위험을 감당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수의 사업 양도가 유럽 경제에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 양도는 신규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존한다. 그러므로 사업의 양도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때와 동일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특히 가족 기반 사업의 중요한 역할, 그들의 전형적인 지역적 기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 전통과 혁신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를 간소화하는 것과 그에 결부된 기술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업가 정신의 잠재력이 더 잘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의 차원에서 성별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극소수의 여성들만이 기업인이 된다. 이에 더해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는다.⁹⁾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법(SBA)은 기업가들 스스로 공조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한 중요한 훈련의 토대로서 중소기업, 특히 가족 기업의 잠재력을 더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활동함으로써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기업가적인 문화를 장려하고 기업가 교육에서 최선의 실천을 교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유럽 연합중소 기업 주간” – 유럽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캠페인 유형의 행사를 포괄한다 – 을 시작할 것이다.

9) “A Common Immigration Policy for Europe: Principles and tools”, COM(2008)359 final, 17.6.2008.

2008년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신규 기업가들에게 경험 많은 호스트 기업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언어 기술을 개선할 가능성을 줌으로써 경험과 훈련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기업인 홍보대사들의 유럽 연합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여성들의 창업을 자극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장려하고 여성 졸업자들 사이에서 기업정신을 고취할 것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학교 교육 과정, 특히 일반적으로는 중·고등 교육에서 기업가 정신을 중요한 능력으로 소개함으로써 젊은이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고 그것이 교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모든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전략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공동체들과의 협조를 고양한다.

(특히 중여세와 배당금에 대한 조세와 재산세)와 같은 조세가 사업의 양도를 방해하지 않게 보장한다.

양도 가능한 사업과 잠재적인 새 소유주를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업 양도를 지원하고 모니터한다.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모니터한다.

II. 회원국들은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들이 조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전체 폐업 가운데 15%의 원인이 파산이다. 매년 평균 70만개 가량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연평균 2백 8십만 개의 일자리가 관련된다.¹⁰⁾ 유럽 연합에서 실패의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

10) “Overcoming the stigma of business failure - for a second chance policy - Implementing

참 고 자 료

는 재창업자의 사업 잠재력을 저평가한다. 오늘날 유럽인의 47%가 과거 실패했던 업체에서 주문하기를 꺼린다. 동시에, 새로 출발하는 일은 긴 파산 절차로 인해 복잡해진다. 유럽 연합에서 파산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개월에서 9년까지 다양하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회원국들 사이에 최선의 관행을 교환하는 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2의 기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예를 들어,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서 기업가들에서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권장한다.

고의성이 없는 파산의 경우, 사업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들을 1년 이내에 완료하게 한다.

지원 시스템을 포함해서 재창업자를 신규 창업자 동일한 조건에서 다루도록 보장한다.

III.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법안을 설계할 때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원칙에 따라 법규들을 설계해야 하고 기존의 법률 환경을 간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보고한 것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제약은 행정적인 법 규들을 따르는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법규와 행정의 부담을 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규 의무로 인해 피고용인 1인당 1유로를 소비하는 데 반해 소규모 기업은 평균 10유로까지 소

the Lisbon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COM(2007) 584 final, 5.10.2007.

비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¹¹⁾ 유럽 중소기업의 36%가 지난 2년 동안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그들의 사업 활동을 저해했다고 보고한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원칙에 맞는 미래의 법규를 만들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향후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이니셔티브들에 보조와 균형의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토콜의 관계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실용적일 때면 언제나 법규와 결정의 개시 일자를 동일하게 할 것이고 발효될 법률안에 관한 연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정책의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인정과 자기 규제와 공동 규제 같은 도구들을 현명하게 혼합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업에 가해지는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책의 결과들이 달성되도록 보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향후 법률적 행정적 이니셔티브들의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중소기업 테스트”) 법안을 계획할 때에는 해당 결과들을 고려한다.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률적 행정적 법안들을 만들기에 앞서 적어도 8주 동안 중소기업 단체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한다.

하락, 이행기, 구체적으로 정보나 보고 요건의 면제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맞춤형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한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발효될 법률안의 공동 개시와 연례 성명의 도입에 따른 유용성을 고려한다.

유럽 연합 법률안을 시행할 때 중소기업을 겨냥한 융통성 있는 임시조치들을 활용하고 “도색 (골드-플래팅)”을 피한다.

11)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on “Models to Reduce the Disproportionate Regulatory burden on SMEs”, May 2007.

참 고 자 료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원칙에 비추어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연합집행위원회가 할 일:

2012년까지 기업의 행정적 부담 가운데 25%를 감소한다는 유럽 연합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들을 모두 제출할 것이다.

2008년 말까지 자산(*acquis*)에 대한 전면 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 초에 발표될 개선된 간소화 진행 프로그램에 결과를 포함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법을 포함해서 입법활동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간소화될 수 있는 법안들을 확인하는 데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유럽 연합 수준에서 2012년까지 행정적인 부담의 25%를 줄이겠다는 공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공약에 부합할 만한 목표들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공동체의 입법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들의 채택을 보장한다.

회원국들이 부가세 한계치를 10만 유로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법안을 채택한다.

IV.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전자정부와 원스톱 솔루션을 장려함으로써 공공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해 중소기업들의 생활을 가능한 한 간소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대적이고 수용적인 공공 행정 기관들은 중소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성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정부와 원스톱 사무소들은 특히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비스 지침의 지속적인 시행 과정은 중소기업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고 회원국들에게 단일한 접촉 지점들의 설립을 요구하고 허가

체계의 수를 줄이고 간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서비스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적 장애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사업 활동의 시작을 가속화하는 데에서 그 요건들을 넘어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유럽 연합의 최고 수행자들로부터 자극을 얻어 사업체를 등록하는 데에 회원국의 행정 기관들이 요구하는 비용의 수준을 낮춘다.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창업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주일 이내로 줄이는 작업을 계속한다.

사업 면허와 허가를 축소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업 활동 시작을 가속한다.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면허와 허가를 주는 데에 최대 1개월의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기관에서 이미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통계 정보와 다른 유형의 정보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소형 업체들이 국가, 지역, 지방 통계청이 책임진 통계조사에 3년마다 1회 이상의 참여를 요구 받지 않게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부적절하게 중소기업을 불필요하게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법규나 절차들에 관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단일한 접촉 지점을 마련한다.

서비스 지침을 적기에 완전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기업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모든 해당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완성할 수 있는 단일한 접촉 지점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서 서비스 지침의 전면적인 적기 시행을 보장한다.

V.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공공 정책 도구들을 조정한다. 그들은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럽 공동체의 공공 조달 기본 틀을 적용하는 방법에 공공기관들이 집중하게 하는 안내를 제공하는 최선의 관행 법령을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그 생애주기 내내 직면하게 되는 시장의 실패를 다루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체 국가 원조 법규들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유럽 연합GDP의 16%를 차지하는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장벽에 부딪친다. 단지 초소형 업체들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로 인해 포기하기 때문이고 공공 기관들이 신생 혁신 기업들보다는 이력이 있는 대기업들과 수주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5년 유럽 연합의 한계치를 넘는 공공 조달 가치의 42%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¹²⁾ 그러나 특히 수주 절차에서 공공 기관들과 계약하는 데에 따르는 요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 남아있는 장애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가 원조는 중소기업들을 그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 도울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제공되는 지원 선택 사항들을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원조에서 주변적인 혜택만을 얻을 뿐이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첫째, 공공 행정기관들은 공동체의 법규 아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허락된 지원 메커니즘들을 항상 활용하지는 않는다. 둘째, 중소기업들에게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셋째,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12) http://ec.europa.eu/enterprise/entrepreneurship/docs/SME_public_procurement_Summary.pdf

이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구매 문화에서 더 큰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계약 주체인 행정 당국을 위한 최선의 관행에 관한 규정집을 발표할 것이다. 관료주의를 줄이는 법, 투명성과 정보를 개선하는 법,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활동의 장을 보장하는 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

한계치 이하의 공공 조달에 대한 계약 공고의 선택적 발표,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온라인 도구, 공공조달요건의 투명성과 같은 일련의 이니셔티브들로 공공조달을 위한 기준 유럽연합 웹사이트를 보완함으로써 공공 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기존 지원의 선택 사항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원조에 관한 안내서를 출간할 것이다.

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

유럽 연합 한계치 아래의 공공 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 포탈을 설치한다.

계약 기관들로 하여금 계약을 더 세분하고 하청 계약의 기회를 좀 더 가시화하도록 촉구한다.

그들의 계약 기관들에게 부적절한 자격과 금융 요건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일깨운다.

정보, 훈련, 모니터링, 좋은 실천의 교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매자들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를 조장한다.

좀 더 목표가 뚜렷한 수단들의 설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요구를 더 잘 다루는 방향으로 국가 원조 정책의 초점을 재조정한다.

VI. 유럽 연합과 회원국은 중소기업들이 금융, 특히 초기 투자 자금, 소액 금융, 메자닌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상업

참 고 자 료

거래에서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환경과 사업 환경을 개발해야 한다.

적절한 종류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기업가들과 중소기업들에게는 주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 목록에서 행정적인 부담에 이어 두 번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투자 은행(EIB) 그룹을 통해 실질적인 액수가 10 억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한 경쟁력과 혁신 기본 프로그램과 같은 유럽 연합 공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다. 2013년까지 결집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할당된 2백 7십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다. 100억 유로 가량이 JEREMIE을 포함한 금융 공학 수단들을 통해 기부될 것이며 벤처 자본을 통해 3십 1억 유로 가량을 기부할 것이다.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 기금 또한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을 조장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다원화를 장려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위험을 꺼리는 태도는 흔히 투자자와 은행들로 하여금 신생 업체나 초기 팽창 국면에 있는 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서 물러서게 만든다. 유럽 초기 투자 자금 시장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있을 수 있는 시장의 실패가 확인되고 교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많은 기업가들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금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잠재적 금융가들에게 그들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자주 형평성이 없는 지위에 있고 그런 지위는 유럽의 대금 지불 지연 문화로 인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사실, 국가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 받는 데에 평균적으로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0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채무불이행 4건 가운데 한 건은 대금 지불 지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매년

4십5만개의 일자리 상실과 2백 5십억 유로의 상실로 나타난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데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리하여 기존 상품들을 현대화하고 그 활용을 간소화하며 2008년을 기점으로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유럽 투자은행 그룹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유럽투자은행그룹(EIB와 EIF)의 평가를 공유한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투자 은행 그룹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새로운 소액금융 이니셔티브의 기본 틀 안에서 비 은행권 소액금융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유로의 초기 자본으로 새로운 “마이크로 펀드”를 설립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또한 확인된 시장 실패들을 겨냥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더 작은 말단을 포용하는 혁신적인 메자닌 금융과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소기업들과 중형주 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시중 은행들과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 도구들을 마련하려는 유럽 투자은행의 계획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유럽 벤처 자본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민간 알선 체제의 도입을 위한 선택사항들을 평가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높은 품질의 투자준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국가 원조 법규들을 존중하면서 특히 부채와 담보를 결합시키는 도구들을 가지고 10만 유로와 백만 유로 사이의 간격을 다룰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들을 단일 시장에서 벤처 자본 펀드들이 국내 펀드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규와 세금 장벽들을 처리한다.

법인 이윤에 대한 조세가 투자를 조장하도록 보장한다.

결집 정책 프로그램들과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해 중소기업들을.

VII. 구체적으로 단일 시장 정책의 관리와 그에 관한 정보를 통해 표준의 개발에서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더 잘 대변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이 특히와 상표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들이 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단일 시장은 공통된 법규에 따라 움직이는 5억이 넘는 고객들을 갖춘 하나의 폭넓은 공동 시장에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7개의 서로 다른 국가 법규들을 단일한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 법규들로 대체하는 것은 간소화가 중소기업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잘 작동하는 단일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세계화에서 더 큰 우위를 누릴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지식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부족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서로 다른 회원국들에서 사업 기회와 활용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여러 법률 시스템들을 다루는 데에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그들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중소기업들은 또한 불공정한 상업 관행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원조를 포함해서 자문과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형태의 공공 지원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출범시킨 Enterprise Europe Network¹³⁾는 무엇보다도 단일 시장이 제공

13) <http://www.enterprise-europe-network.ec.europa.eu/>

하는 기회와 관련해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을 돋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표준들의 개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인증 과정을 포함해서 표준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IPR)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공동체 전매 관할권과 범 유럽 전매 관할권을 포함해서 유럽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고급 품질과 법률적으로 안전한 특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시장의 실패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곳에서 시장의 실패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과 부문의 모니터링을 더 크게 활용해 단일시장의 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존 시장 개방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전자 서명과 전자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2009년 2분기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참여하는 것을 돋기 위해 모든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개시할 것이다.

표준화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와 그들의 이해관계 방어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 표준에 관한 중소기업의 정보와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금융 지원을 확대(2008년 백만 유로와 2009년 2백 1십만 유로로)할 계획이다.

내부시장조화청(OHIM)의 금융 전망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상표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공동체의 상표 시스템을 좀 더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참 고 자 료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은 교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법규의 과편화를 없애는 작업을 할 것이다.

유럽 표준 기구들에 대한 권고 사항:

유럽 연합 입법과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와 함께 시작해서 표준들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과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그들의 사업 모델을 재고한다.

중소기업 협회의 대표들과 조율된 한 두 곳의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무제한 접근과 서로 다른 언어들로 규범적인 참고 목록들을 포함해서 유럽 표준에 관한 요약을 체계적으로 발표한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상호 인정 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한다.

단일 시장 권리 행사에 따른 문제들이 비공식적으로,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SOLVIT¹⁴⁾각국 표준 기구들이 표준에 대한 접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사업 모델을 재고하도록 장려한다.

표준화 집행 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각국 표준 기구들이 유럽 표준 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표준들을 더 잘 활용하고 그들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촉진활동과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한 상업 관행들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자문 서비스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한다.

VIII.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모든 형식의 혁신들을 촉진해야 한다.

14) http://ec.europa.eu/solvit/site/index_en.htm

그들은 중소기업들의 연구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 국가를 초월한 연구, 중소기업에 의한 클러스터의 구성과 능동적인 지적재산 운영에 그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상담에 응한 회사의 60% 이상은 학교가 기업가들과 회사 직원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이 결과는 읽기, 쓰기, 자연과학, 경영, 기술, ICT, 언어 기술들과 같은 필수적인 기술을 젊은 이들에게 늘 제공하고 그들이 창의적이 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요구를 부각시킨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제공할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평생 교육의 중요한 능력에 관한 유럽 참고 기본 틀¹⁵⁾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유럽 결집 정책은 2007-2013 기간에 걸쳐 1백 3십 5백억 유로로 노동자, 기업가, 기업의 적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한다. 이 액수의 상당 부분이 직접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자영업과 사업 창업 지원금은 총 2십 8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연합에서 미래 기술 필요에 대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 부족은 연구와 혁신의 이용되지 않은 잠재력과 연결된다. 2007년 유럽 연합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 가량이 신상품을 가지고 있고 신상품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을 연구 공동체에 더 잘 통합하고 대학과 중소기업 사이의 연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 송장과 전자 정부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 의한 적극적인 지적재산 운영을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18.12.2006.

이런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20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숙련공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을 추가로 확장할 것이다.

2008년 회사들이 그들의 전자 기술들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직원들의 경력과 자격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전자기술 경력 포탈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에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전자 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을 도울 온라인 전자 사업 안내서를 출간할 것이다.

7차 RTD 기본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간소화를 통한 더 나은 정보와 더 높은 금융 등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7차 기본 프로그램의 한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그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처리의 수혜를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조장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특히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통해 연구, 개발, 혁신을 돋기 위해 국가 원조 법규들을 간소화할 것이다.

주로 각국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들의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구와 혁신능력을 지원함으로써 고도성장 기업의 출현을 부양하고 있다.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클러스터들의 새로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혁신적인 클러스터들에 중소기업들을 더 큰 참여를 장려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국가를 초월한 클러스터 공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클러스터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지적 재산의 상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파일럿 프로젝트를 출범해서 지식 이전에 중소기업들을 참여를 도울 길을 모색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유럽 혁신 기술 연구소(EIT)가 조장하는 지식 이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유럽 혁신 기술 연구소(EIT)가 수행하는 활동들의 기본틀 안에 중소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혁신적인 클러스터들의 참여를 통한 것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국제화하고 고성장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국가 원조의 새로운 공동체 기본 틀에서 허용된 것처럼, 공공 연구 인프라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연구 개발 서비스의 활용, 숙련된 피고용인들의 채용과 훈련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연구와 혁신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것이 호혜적인 혜택이 되는 각국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다른 회원국들에서 온 중소기업들에게도 개방하고, 예를 들어, 합동 프로그래밍과 같이 국가를 초월한 연구 활동에 중소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결집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 정신, 혁신과 지식에 관련된 지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업들이 전자 송장과 전자 정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위한 전자 신분증의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 조달 기관을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선도 시장 이니셔티브의 조속한 시행에 기여하는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IX.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중소기업들이 환경적인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와 전문 기술과 금융의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서 부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녹색” 시장과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의 기회를 완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 변화, 에너지 공급의 부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도전이다. 중소기업들은 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사업 모델을 채택해야만 한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의 길을 연다.

참 고 자 료

중소기업의 29%만이 에너지나 원료 절감을 위한 수단들을 도입했다 (대기업의 46%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과 비교해서). 대기업이 19%인데 비해 유럽 연합중소 기업의 4%만이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에너지와 원료의 가격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와 기후 변화 예보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기회로 삼기 위해 이런 도전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들의 효율성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더 가벼워진 환경 절차, 낮아진 비용, 클러스터 등록의 선택 사항을 통해 환경 회계 경영 시스템 (EMAS)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환경 효율적인 가동, 시장 잠재력과 더 효율적인 가동을 위한 지원금 기회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Enterprise Europe Network의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에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기존의 국가 원조 조항들에 맞추어 시장 접근, 기술 이전, 표준의 활용과 금융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혁신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과 중소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원조에 관한 공동체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경제 효율적인 사업과 제품을 위한 인센티브들(예를 들어, 조세 인센티브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사업의 자금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급)을 제공하고 GBER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환경 원조에 간소화된 접근법을 활용한다.

중소기업들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과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집 정책 프로그램에 할당된 2십 5억 유로를 충분히 활용한다.

X.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특히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기업 훈련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유럽 연합 외부의 시장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유럽 중소기업의 8%만이 수출로의 전환을 보고한다(소형 기업의 7%가 수출을 보고했다). 이는 대기업(28%)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더욱이 평균적인 중소기업의 수수의 12%만이 해외에서 구매된 것이다.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들은 유럽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미답의 잠재력을 보인다. 특히 최근 유럽 연합의 확대는 “구” 회원국들과 “신” 회원국들 모두에서 온 회사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는 유럽 연합 후보 국가들과 인접 국가들에서 시장 기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무역 장벽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그들의 제한된 자원과 위험을 흡수하는 낮은 능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에서 잠재적인 동반자들과 틈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사업에 대한 문화적인 장벽과 법규와 법률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세계화로 제공된 기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의 개선, 지적 재산권 시행, 공정한 경쟁의 보장에 더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려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 일:

회원국들의 무역 자문단들과 유럽 연합 기업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주요 수출 시장들에서 시장 접근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유럽 연합외부 시장의 무역 장벽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정보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3국들의 시장, 특히 WTO 협상과 양자 조약들을 통해 선진국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의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특히 비 유럽 연합 국가들의 공공 조달 시장 개방을 모색할 것이다. 양자 협상과 다자간 협상(WTO 정부 조달 협약)을 통해,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이끌어낼 것이다.

WTO와 양자 협상 모두에서 무역의 촉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Enterprise Europe Network* 를 통하고 유럽 중소기업 현장과 중소기업 법(SBA)에 근거한 좋은 실천들을 교환을 통해 이들 국가들에서 “작은 것 먼저 생각하라” 원칙을 조장함으로써 후보 국가들과 다른 인접 국가들의 시장에 유럽 연합 중소기업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도와 중국의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들을 출발로 2009년에 선별된 시장들에 유럽 기업 연구소들을 설립할 것이다.

2010년까지 중국에서 유럽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경영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에 초점을 맞춘 ‘중국 관문’ 시스템을 출범할 것이다.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사항: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의한 중소 기업들의 지도를 장려한다.

5. 중소기업법(SBA)의 시행과 관리

2007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이래 유럽 “중소기업 법(SBA)”이라는 아이디어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 아이디어는 정부 차원에서 유럽 의회와 중소기업 공동체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들 모두의 완전한 정치적 공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의 새로워진 혁신을 바탕으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이사회가 유럽 “중소기업법(SBA)”을 환영하고 지원하며 10개 원칙들을 채택하고 제안된 시책들의 시행에 혁신하기를 권

고한다. 더욱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신속히 관련 법안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중소기업법(SBA)은 그것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교부된 것들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과 일자리 전략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은 2008년 말에 계획된 리스본 주기의 업데이트를 이용해 그들의 국가 개혁 프로그램들과 그들의 연례 시행보고서에서 중소기업법(SBA)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국들은 동봉된 유럽 연합에서의 좋은 실천에 관한 개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최선의 실천들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법(SBA) 시행에서 이룬 진보를 평가할 것이고 성장과 일자리 전략의 기본 틀에서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할 것이다. 이는 유럽 이사회가 공동체와 회원국 수준 모두에서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이룬 진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록: 중소기업 정책의 좋은 실천 사례들의 교환

중소기업 정책에서 좋은 실천 사례들을 교환하는 일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리스본 전략의 시행에 성공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2000년 이래,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실천 사례들을 수집해왔다. 유럽의 중소기업 현장 아래 수집된 그런 예들은 현장의 온라인 목록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charter/gp.](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charter/gp)

유럽기업상은 지역 기업들을 촉진에 뛰어난 수상자를 인정하고 탁월한 이니셔티브들에 대해 보상한다. 사업을 촉진하는 좋은 실천사례들의 모음은 다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http://ec.europa.eu/enterprise/entrepreneurship/smes/awards/download/compendium_2007_en_lowres.pdf

이 부록은 회원국들의 좋은 실천 사례들을 제공해서 중소기업법(SBA)의 시행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

원칙 1: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The Hellenic Technology Clusters Initiative, Greece
	Saxony-Anhalt Impulse Network, Germany
	Website: www.htci.gr
	Website: www.impuls-netzwerk.de
원칙 9:	중소 기업들이 환경적인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한다.
	Youth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Strategy in Wales, United Kingdom
	A new process of micro finishing surfaces in the ceramics industry, decrea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Italy
	Website: http://www.projectdynamo.co.uk ; www.becauseyoucan.com .
	Website: http://www.fondovalle.it
	Cap'Ten, be captain of your project, Belgium
	Ecological tax reform, Estonia
	Website: www.ichec-pme.be
	Website: www.fin.ee
	Emax - the Nordic training camp for young entrepreneurs, Sweden
	EDM - Electronic Data Management in Environment and Waste Management, Austria
	Website: www.emaxevent.com , www.startcentrum.se

	Kinder Business Week, Austria
	Website: www.lebensministerium.at
	Website: www.kinderbusinessweek.at
원칙 10: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한다.
	Entrepreneurship Days: Emprendemos Juntos - We are all entrepreneurs, Spain
	Internet Fair, Poland
	Website: www.emprendemosjuntos.es
	Website: www.euroinfo.org.pl
	Developing entrepreneurial culture among women, Romania
	Pipe - introduction plan to foreign promotion, Spain
	Website: www.animmc.ro
	Website: www.portalpipe.com
원칙 2: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Sprint - Joining together to compete on world markets, Italy
	Development programme preparing for SMEs' controlled succession of generation, Finland
	Website: www.sprint-er.it
	Website: www.te-keskus.fi , www.yrityssuomi.fi
	Faster start-up after bankruptcy, Denmark
	Website: www.naec.dk
	Help for the self-employed and business owners in difficulty, Belgium
	Website: www.beci.be

참 고 자 료

Principle 3:	“작은 것 먼저 생각하라” 원칙에 따라 법규를 설계한다
	Public consultation website “Teeme koos”, Estonia
	Website: www.osale.ee ; www.riigikantselei.ee ; www.valitsus.ee
	Implementation of support services for SMEs on local level through One-stop-shops, Slovenia
	Website: www.japti.si
	Regulation checklist, United Kingdom
	Website: www.businesslink.gov.uk
	Y4 Committee ,Finland
	Website: www.y4.fi
원칙 4: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The e-government programme of the Belgian Social sector for SMEs, Belgium
	Website: www.ksz-bcss.fgov.be
	Single registration points for entrepreneurs, Czech Republic
	Website: www.mpo.cz
	One-Stop-Shop for Entrepreneurs, Germany
	Website: www.one-stop-shop-trier.de
	Micro-business management centre for economic and financial reporting, France
	Website: www.artifrance.eu
	Public information web portal for small businesses, France
	Website: pme.service-public.fr
	CORE - Companies Online Registration Environment, Ireland